발간등록번호
11-1420000-000264-01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한가? 기업승계를 위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가업승계 대책이 왜 있어야 하나?
가업승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 안내서

가업승계 A에서 Z까지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법에서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동일세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중소기업 도우미 SPi 1357
중소기업청
Kbiz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안내서

가업승계

A에서 Z까지

중소기업 도우미 SPi 1357
중소기업청

Kbiz 중소기업중앙회

Contents

Q&A 중소기업 가업승계 핵심포인트 20문 20답

1장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개념 • 1

1.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정의 · 2
2.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중요성 · · · · · · · · · · · · · · · · · · · 4

2장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 • 7

1.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현황 · 8
2. 가업승계의 장애요인 · 13

3장 가업승계 대책의 수립 • 19

1. 가업승계 대책의 흐름 및 접근 · · · · · · · · · · · · · · · · · · 20
2. 전문경영인 도입 · 36
3. 가업승계 계획의 예시 · 39

4장 가업승계와 세무전략 • 43

1.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요 · 44
2.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 · · · · · · · · · · · · · · 55
3.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방안 · · · · · · · · · · · 66

5장 가업승계 관련 법제도의 이해 • 159

1. 가업승계와 관련된 민법제도 · · · · · · · · · · · · · · · · · 160
2. 상법의 활용방안 · 179
3. M&A를 통한 가업승계 · 195

부 록 • 209

1. 2008년 세제개편 주요내용 · · · · · · · · · · · · · · · · · 210
2. 가업승계 지원기관 연락처 · · · · · · · · · · · · · · · · · · 212

본 책자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Q&A

중소기업 가업승계 핵심포인트 20문 20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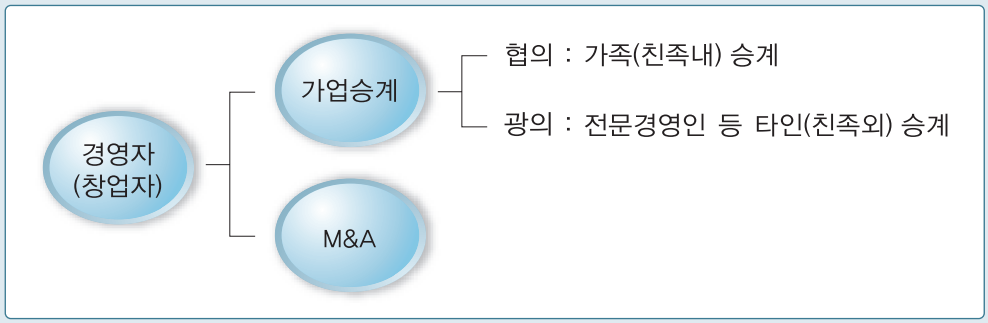
Q 1 〉 가업승계란?
Q 2 〉 가업승계 대책이 왜 있어야 하나?
Q 3 〉 가업승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Q 4 〉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Q 5 〉 증여세의 계산방식은?
Q 6 〉 상속세의 계산방식은?
Q 7 〉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Q 8 〉 가업상속공제란?
Q 9 〉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조세특례란?
Q10〉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조세특례란?
Q11〉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
Q12〉 가업승계시 알아두어야 할 법제도는 무엇인가?
Q13〉 법정상속분이란?
Q14〉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하나?
Q15〉 유류분이란?
Q16〉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Q17〉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한가?
Q18〉 무의결권주식을 가업승계에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한가?
Q19〉 가업승계를 위해 M&A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가?
Q20〉 2008년 세제개편 주요내용은?

Question

1. 가업승계란?

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소유권이나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중소기업 가업승계는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우 대체로 소유권 승계와 경영권 승계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한다.



중소기업은 우리 나라 고용 시장의 87.5%를 담당하며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경제의 근간이다. 최근 사회전반의 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중소기업 경영자 역시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

- 중소기업 CEO의 평균연령 : 48.2세('93) → 51.3세('06)
- 60세이상 CEO의 고령화율 : 10.6%('93) → 16.1%('06)

60~70년대 창업한 경영1세대의 고령화로 가업승계가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으며,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가 국가경제를 안정 ·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라는 인식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

Answer

Question

2. 가업승계 대책이 왜 있어야 하나?

가업승계 대책이 수립되지 않으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가업승계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기업은 그리 많지 않다. 가업승계가 먼 훗날 이야기처럼 생각이 들어 당면한 문제들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되고, 승계해 줘야 할 경영자 입장에서는 기업이나 가정에서의 영향력 약화를 원하지 않을 수 있으며, 후계자 입장에서는 현 경영자의 은퇴를 종용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업승계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채 현 경영자에게 사망 등 불의의 사고가 닥친다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이유로,

- 첫째,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하여 후계자에 대한 주식이전이 계획되지 않았다면, 경영권 확보에 필요한 주식이 뿔뿔이 흩어져 현 경영자가 염두에 두었던 후계자가 회사를 승계받지 못할 수 있다.
- 둘째, 사전에 충분한 후계자 교육을 통하여 승계를 준비하지 않는 경우, 후계자와 기존의 임직원들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셋째, 가업승계시에는 막대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절세방안을 세워놓지 않으면 세금을 내기 위해 회사의 주요 재산을 헐값에 내놓아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에 체계적인 가업승계 대책을 수립해 가업승계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고, 기업의 영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Answer

Question

3. 가업승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 하나?

「현황 파악 → 승계유형 결정 → 관련자들간 의사소통 → 후계자 교육 → 경영권 및 소유권 이전」으로 진행된다.

가업승계 대책은 현재 기업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즉, ① 경영자원, ② 리스크 및 전망, ③ 경영자의 개인재산, ④ 후계자 후보의 상황, ⑤ 조세부담능력 기타 예상되는 문제 등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승계유형의 결정이다. 친족이나 친족외 승계, M&A 유형 중 자사의 실정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여야 한다.

기업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승계유형을 결정하였더라도, 가업승계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후계자 후보들은 물론, 친족, 회사의 임직원, 거래처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경영자의 결단을 설명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이러한 사전 작업을 거친 후, 후계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경영권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후계자 교육은 사내 · 사외의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경영자 자신의 경영 이념과 노하우(Know- How)를 전수하는 것이 필수적이고, 경영권 및 소유권의 이전에 대해서는 관련 법제도에 맞추어 대비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장애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Answer

Question

4.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동일세율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증여세와 상속세의 구체적인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현행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에 걸친 누진세율이다(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현행 증여세 및 상속세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현행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Answer

Question

5. 증여세의 계산방식은?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매 증여시마다 10년 이내에 증여된 증여재산 가액을 합하여 상속세와 같은 비율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일 때부터 부과된다.

증여재산가액 + 10년내 증여재산 + 증여의제 및 증여 추정재산 − 담보된 채무

- 증여재산가액: 증여당시 시가
- 10년내 증여재산: 10년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
- 담보된 채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세 과세표준 × 세 율

- 증여재산 공제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비속 : 3천만원 (미성년자 : 1천5백만원)
  - 기타친족 : 5백만원
  - 가업승계증여 등 : 5억원
- 세 율
  - 10%~50%
  - 가업승계증여 등 10%

= 증여세 산출세액 +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 기납부 증여 세액공제

-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 30% 할증
- 기납부 증여 세액공제: 10년내 증여재산 합산시 당초납부세액 공제

− 신고세액공제 + 가산세 = 납부할 세액

- 신고세액공제: 기한내 신고시 10%공제
- 가산세
  - 신고불성실가산세 : 10~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1일 0.03%

Answer

Question

6. 상속세의 계산방식은?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상속세 역시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상속세에서는 증여세보다 공제의 범위가 넓다.

총상속재산 – 비과세재산 –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 증여재산

- 총상속재산: 본래의 상속재산, 간주상속재산,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 비과세재산: 금양임야, 묘토인 농지
- 상속세과세가액 불산입재산: 공인법인 등 출연재산
-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업승계 증여 등 포함)

= 상속세 과세가액 – 상속공제 = 과세표준 × 세 율

- 상속공제: 기초공제, 가업상속공제, 배우자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 등
- 세율: 10%~50%

= 산출세액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 세액공제 = 납부할 세액

-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30% 가산
- 세액공제: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액공제, 단기재상속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Answer

Question

7.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원칙적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하되 대부분의 경우 보충적 평가에 의해 그 가치를 평가한다.

상속세나 증여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평가는 원칙적으로 상속 내지 증여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이는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거의 없어 시가의 산정이 어렵고, 납세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매매선례를 주장하거나 시가감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객관적인 시가라고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일반적인 법인에 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 10%)로 나누어 계산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Answer

Question

8. 가업상속공제란?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을 상속받는 상속인의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는 세법상 가업승계지원제도의 핵심이다. 현행 가업상속공제제도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30억원을 한도로 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그런데 2008년 세제개편에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할 경우 최대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까지 공제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여기서 말하는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재산을 의미하고, 법인기업의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을 의미한다.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하고, 상속인은 ①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후, ③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한다(세제개편은 ③ 요건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로 완화하였다).

Answer

Question

9. 가업승계 증여에 대한 조세특례란?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한 주식 등의 증여에 조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승계 조세특례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2010. 12. 31.까지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내용

증여세 부담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X 10%

가업승계 조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단, 가업승계 조세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아니하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가업을 휴업 · 폐업하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한편, 가업승계 조세특례 적용을 받는 재산은 10년 이전에 증여된 부분도 상속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Answer

Question

10.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조세특례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하는 경우 조세혜택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조세특례는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토지 · 건물 ·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의 증여분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적용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회사채와 같은 채권 등이 그 목적물이 될 수 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하고,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창업을 하지 아니하거나, 창업자금을 그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에는 그 창업자금 전체 혹은 용도에 사용되지 않은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부과한다. 가업승계 조세특례와 마찬가지로 창업자금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재산 역시 10년 이전에 증여된 부분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이 된다.

Answer

Question

11. 가업승계를 위해 사전증여를 활용하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

'합산과세가 배제' 되고 '재산가액 평가시점' 이 달라져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개시일(혹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혹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7~8년 전에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가액은 상속세(혹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사전증여를 한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누진세율도 적용되지 않는데, 장기적인 상속설계가 필요한 까닭은 바로 이러한 점 때문이다(단, 가업승계 조세특례나 창업자금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재산은 10년 이전에 증여된 부분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된다).

그 밖에도 사전증여를 할 경우에는 상속세 계산과 관련하여 재산평가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 또 다른 실익이 있다. 예컨대, 피상속인이 100원 상당의 A 주식을 상속인에게 증여한 후 수 년 만에 사망하였고, A 주식의 현재 가치가 1,000원이라고 가정하여 보자.

이때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A주식의 가치는 현재 가치인 1,000원이 아니라 '당초 증여 받은 시점의 가치' 인 100원으로 평가된다. 결국, 상속인은 A주식을 사전에 증여 받음으로써, 상속재산을 신고할 당시의 가치인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고 그 결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Answer

Question

12. 가업승계시 알아두어야 할 법제도는 무엇인가?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법, 민법, 상법 등 관련 법제도를 사전에 파악해 놓을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와 관련된 법제도 중 중요한 것은 '민법 중 상속과 관련한 규정들', '상법 중 회사법과 관련한 규정들', '세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한 규정들' 이다.

일반적으로 가업승계에서 가장 많이 신경을 쓰는 것은 조세부담이다. 그러나, 민법이나 상법 규정을 간과하면 경영자가 원하는 형태의 가업승계를 달성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예컨대, 경영자가 회사 주식을 자신이 후계자로 점 찍은 자식에게 모두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긴다고 할지라도, 우리 민법상 유언은 엄격한 형식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형식에 맞지 않은 유언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후계자가 안정적인 회사경영을 위해 필요한 주식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민법은 상속인들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유류분), 미리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유류분에 대해 준비를 해 두어야 한다.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 제도는 자주 개정이 되므로 늘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지원해 주기 위하여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요건을 완화하는 세제개편을 추진하였다.

Answer

Question

13. 법정상속분이란?

사망자가 유언으로 상속분을 정하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이 이루어진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관계가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법적으로 사망자의 직계비속(자식 혹은 손자손녀 등)이 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직계존속(부모 혹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2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가 3순위, 사망자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4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의 상속인은 상속을 받지 못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또는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상속인이 여럿 있는 경우 상속재산은 첫째, 사망자의 유언, 둘째, 상속인들 사이의 협의, 셋째, 법정상속분의 순서로 나누어진다. 따라서, 사망자가 유언을 남기지 않고,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수대로 균분(단, 배우자는 50% 가산)되는 것이 원칙이다.

예컨대,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 아들 1, 딸 1, 아내가 있는 경우
  → 아들 1 : 딸 1 : 아내 1.5 = 아들 2/7 : 딸 2/7 : 아내 3/7
- 딸 1, 아내, 부모가 있는 경우
  → 딸 1 : 아내 1.5 = 딸 2/5 : 아내 3/5
- 아내와 아버지만 있는 경우
  → 아버지 1 : 아내 1.5 = 아버지 2/5 : 아내 3/5

Answer

Question

14. 유언은 어떻게 해야 하나?

법에서 정한 형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이다.

우리 민법은 유언의 방식을 엄격히 규정하고,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보고 있다.

가업승계에 관한 유언은 경영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관철시키는 수단이므로 철저히 준비하여야 한다. 자칫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가 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은 상속인 뿐 아니라 해당 기업에게도 미치게 된다.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날짜와 주소, 성명을 모두 自書한 후 날인한 방식의 유언을 말한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유언자가 위의 각 항목 모두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필시키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여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혹은 기명 · 날인)을 받아 공증인이 유언장을 보관하는 방식을 뜻한다.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분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nswer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례

유 언 서

유언자 000은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한다.

1. 다음의 부동산은 처 000이 상속한다.
   서울 00구 00동 00의00 00아파트 00동 00호
2. 00주식회사 주식 00000주는 장남 000가 상속한다.
3. 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인 예금은 장녀 000가 상속한다.
4.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유산 전부는 차남 000이 상속한다.
5.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사람을 지정한다.
   성 명 : 000
   주 소 : 경기 00시 00구 00동 89
   연락처 : 000-0000-0000
6. 유언집행자 000에 대해 본 유언집행을 위한 예적금 등의 명의변경, 해약 및 환금 등 일체의 처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상.

위의 유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언자는 이 유언 전체를 직접 쓰고, 서명 날인한다.

유언 작성연월일 : 2XXX. XX. XX.
유언자 : 0 0 0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
서울 00구 00동 00의00 00아파트 00동 00호

Answer

Question

15.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유류분이라고 한다.

생전증여나 유언을 할 때에는 유류분에 주의하여야 한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말한다.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과 배우자) 내지 1/3(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을 한도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제4순위 상속인인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한다). 따라서, 사망자가 생전에 후계자에게 재산의 상당 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어느 상속인에게 배분되는 몫이 유류분보다 적다면, 그는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예컨대, A에게는 두 아들 C · D가 있고, A가 후계자로 지목한 C에게 10억원을 상속한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며, 상속재산은 총 12억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C와 D는 각 6억원을 법정상속할 수 있었고, D의 유류분은 3억원이다. D가 A의 유언으로 인하여 자신의 유류분보다 적은 2억원 밖에 상속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D는 C에게 1억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흔히 눈 밖에 난 상속인은 단 한 푼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유류분은 상속인의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가업승계를 계획할 때에도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지 않으면 추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Answer

Question

16.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주식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정관변경 등 중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의 지지가 필요하다.

우리 상법은 주주총회 결의와 관련하여 의안의 중요도에 따라 다수결의 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다.

'보통결의'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한다. 보통결의사항은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사항 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에 적용된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이다.

상법에 규정된 주요 특별결의사항으로는 정관의 변경, 자본의 감소, 회사의 합병, 회사의 분할,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이사 · 감사의 해임 등이 있다.

안정적으로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 합병 등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주주 역시 몇 명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주주총회에 주주가 100% 출석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다. 이런 면에서, 중요사항의 결정을 위해서는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Answer

Question

17. 주식양도를 제한하는 것도 가능한가?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소규모 회사에서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회사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하지 않는 주주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상법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식양도를 제한하려면 ① 정관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정관에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주식의 양도를 할 수 없다",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주식의 양도를 할 수 있다"는 등의 규정이 들어 있어야 한다.

② 주식의 양도제한은 등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주식양도의 승인기관은 반드시 이사회로 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승인기관을 대표이사 내지 주주총회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 제한을 활용한다면, 일부 상속인이 회사의 경영권을 노리는 외부인에게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회사 경영권에 관한 위협을 미리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Answer

Question

18. 무의결권주식을 가업승계에 활용하는 방법이 가능한가?

가업승계를 위해 무의결권주식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무의결권주식의 본래의 기능은 회사의 경영이 아닌 이익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 주주로부터 쉽게 자금을 조달하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함에 있다.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나 합병 등 중요사항의 결의에 필요한 수의 의결권 주식을 확보하게끔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식이 여러 명이라면 후계자가 아닌 자식들에 대한 유류분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후계자에게는 보통주를 승계시키고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는 무의결권주식을 승계시킨다면, 후계자는 안정적으로 경영권을 확보하고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은 적절한 재산적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적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주식의 환금성이 떨어지므로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제는, 일정한 기간 내에 무의결권주식을 회사의 이익으로 상환하도록 함(‘상환주식’)으로써, 후계자가 승계한 회사의 경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환금성을 보장해 주는 방법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하다.

무의결권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장법인이 일정 요건하에서 발행하는 무의결권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다.

Answer

Question

19. 가업승계를 위해 M&A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한가?

가업승계를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M&A를 활용할 수 있다.

M&A(Merger and Acquisition)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수하는 기업의 인수, 혹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기업의 합병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구조를 만들어내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친족이나 임직원 중에서 사업을 승계할 후계자를 마땅히 찾을 수 없을 경우 회사 자체를 매각하여 제3자가 경영하도록 하거나,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를 그 자식 세대로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M&A를 활용할 수도 있다.

M&A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M&A의 형태로는 합병, 주식양도, 주식교환, 영업양도, 회사분할 등이 있다.

M&A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M&A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의 평가, 즉 가격의 결정이다. 자식세대로 기업을 승계시키는 수단으로서 M&A를 고려하고 있다면 절세 차원에서는 기업가치가 낮은 것이 유리한 반면, 제3자에게 기업을 매각하기 위하여 M&A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Answer

Question

20. 2008년 세제개편 주요내용은?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가업상속 적용요건을 완화하였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로 제한되어 있으나, 세제개편은 공제범위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였다.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또한, 세제개편은 가업상속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현행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하였고,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요건 역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자로 취임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한편,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요건 중 하나로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세제개편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를 인정하였다.

Answer

Chapter
01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개념

1.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정의 · · · · · · · · · · · · · · · 2
2.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중요성 · · · · · · · · · · · · · ·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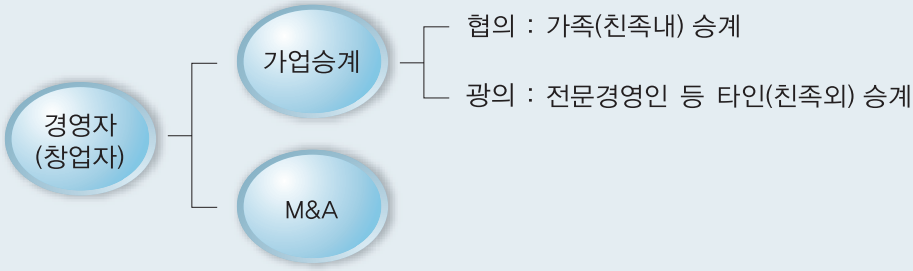
1.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정의

중소기업 가업승계란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후계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로 "사업승계" 혹은 "기업승계"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하나,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단일 가족의 구성원이 기업 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구성원 중 2인 이상이 경영과 관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다음 세대의 가족 구성원에게 기업이 승계될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가족기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의 승계에 있어서는 통상 "가업승계"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다. 여기서도 통례[1]에 따라 "가업승계"란 표현을

가업승계의 개념상 분류



1. 일본에서는 주로 "사업승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사용하기는 하나, "가업승계"라고 하여 그 승계가 반드시 친족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한정하지 않고, 친족 외의 종업원, 외부 전문경영인에게 승계를 하거나 혹은 M&A를 통한 사업처분도 책 내용에 포함하여 기술하고자 한다.

대기업은 주주의 구성이나 경영자의 층이 다양하여 최고경영자나 대주주의 유고가 있더라도 기업의 영속성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기업소유주가 곧 경영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영자 자신이 곧 회사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경영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경영자 교체의 성공여부가 사업의 지속성을 좌우하게 된다.

문제는 경영자 혹은 그 가족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업승계에 따르는 세금 부담의 실질적인 체감도가 매우 크고, 후계자의 후보군도 대기업에 비하여 다양하지 않다는 점이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재산으로서의 회사를 후계자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다. 경영자의 경영에 대한 이념과 가치관 등 무형적인 자산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까지도 함께 다음 세대로 이양하는 의미를 가진다. 때문에 가업승계는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2.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중요성

가. 국가경제 근간으로서의 중소기업

중소기업은 우리 나라 고용 시장의 87.5%를 담당하고 있고 전체 사업체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2] 국가경제의 근간이다. 가업승계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하여 경영자의 고령화가 지속되면 적극적인 자세로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기 어려워지고, 이는 다시 중소기업의 투자 위축, 신기술 개발의 부진, 기업 가치 하락의 문제로 이어진다.

창업도 어렵지만 수성은 더욱 어렵다. 그 때문에 수십 년의 업력을 자랑하면서 착실하게 쌓아온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가장 확실하고 경제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이 바로 가업승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업승계를 단순히 "부의 대물림"이라는 편향된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여전히 존재한다.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나라 고용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장인정신의 계승과 고용시장의 안정이라는 사회적 가치의 달성으로 바라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2.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2006) 참조. 2006년을 기준으로, 개인 및 회사법인 형태의 전체사업체 3,022,053개 중 중소기업이 3,017,787개로서 99.9%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 종사자 12,445,088명 중 중소기업 종사자가 10,884,650명으로서 87.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각 조사되었다.

이러한 인식의 전환은 중소기업 경영자 스스로가 먼저 실천해야 한다. 가업승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경영자 스스로의 확신이 없다면,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장담할 수 없고, 경영자의 경영이념 등의 무형적 자산이 후계자에게 원활하게 이어지기도 어렵다.

우리 나라는 이미 2000년경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수 대비 7%를 넘어서는 고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18년경부터는 고령인구가 전체 인구의 14%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고령화가 두드러지고 있다. 가업승계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을 비추어 볼 때,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는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하고도 중요한 사회적 이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나. 가업승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태동

선진국의 경우 일찍부터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세제지원과 후계자 양성프로그램 개발 등 다양한 지원을 강구해 왔다.[3]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짧은 산업화의 역사와 가업승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으로 인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미비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상속세 등에 있어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

3 . 독일은 가업승계 이후 10년간 상속세를 유예하고, 고용유지 등 일정요건 이행시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도입중에 있고, 프랑스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상속세를 75%까지 경감해 주고 있다.

제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으나, '부의 세습'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그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정하여 실제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기업은 극소수에 불과하였다.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필요성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중요성 등이 홍보되었고, 그 결과 2008년 세제개편에서도 가업승계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가업승계에 대한 우리 나라의 사회적 지원은 이제 기지개를 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세제혜택 등 사회적 지원만을 기대하면서 가업승계를 계속하여 미루거나, 조세부담 등을 이유로 가업승계 자체를 포기할 수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합리적이면서도 적절한 가업승계의 대책을 수립하여 착실하게 진행해 나간다면 장수하는 명품 중소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가업승계는 제2의 창업이라는 점을 명심하여야 한다.

Chapter
02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

1.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현황 · · · · · · · · · · · · · · · · 8
2. 가업승계의 장애요인 · · · · · · · · · · · · · · · · · ·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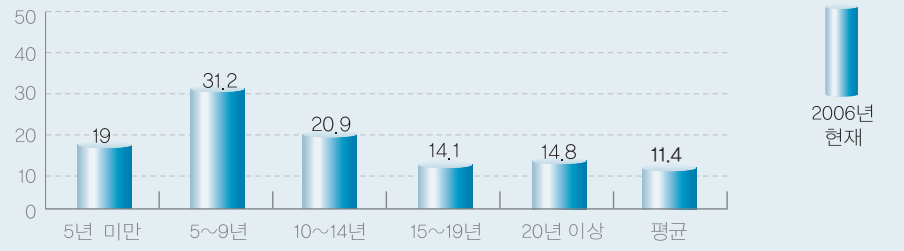
1.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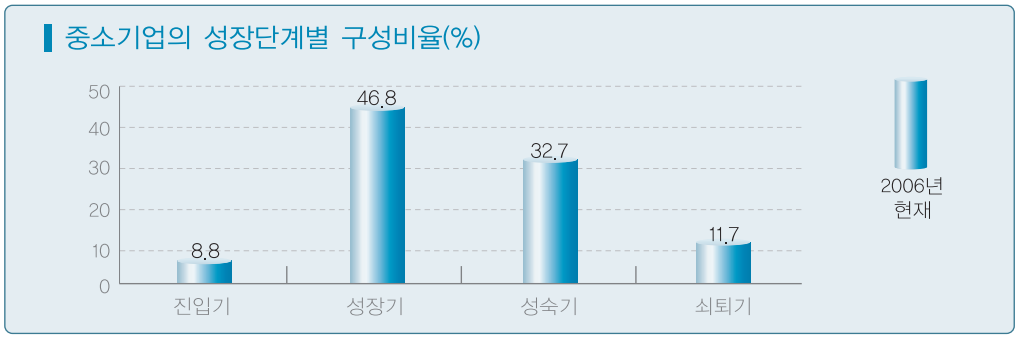
2006년 기준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중소기업청)에 의하면 중소제조업 경영자의 평균연령은 51.3세로 나타났다. 한편 중소기업의 평균업력은 11.4년(20년 이상 장수기업의 비율은 14.8%)으로서, 많은 중소기업이 지속적인 성장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같은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성장기를 지나 성숙기 내지 쇠퇴기에 들어선 비율이 44.4%에 이른다.

중소기업 경영자의 연령별 구성비율(%)



중소기업의 업력별 구성비율(%)





1. **진입기** : 창업 3년 이내의 기업으로서 제품/서비스의 개발단계
2. **성장기** : 매출액, 시장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단계
3. **성숙기** : 매출액, 시장점유율은 정체되나 지속적으로 수익성이 확보되는 단계
4. **쇠퇴기** : 뚜렷한 매출성과 없이 기업활동이 위축되거나 재도약을 준비하는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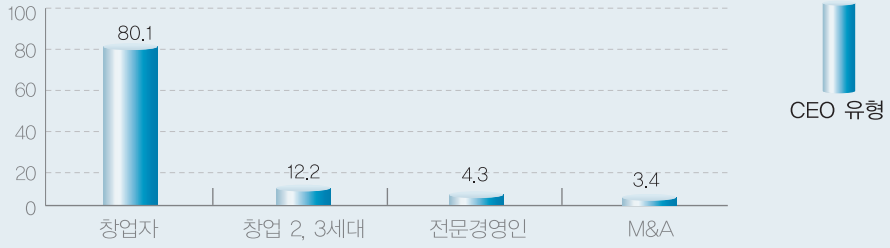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2006. 1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의 중소제조업 5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른 가업승계 현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4]

가. 경영자의 유형별 구성

경영자의 유형을 살펴보면, 창업자가 80.1%, 창업 후세대가 12.2%, 전문경영인이 4.3%로 조사되었고, 기업인수 · 합병으로 인한 경영자는 3.4%에 불과했다.

4.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CEO 경영의욕 및 경영승계 의견조사결과(2006. 1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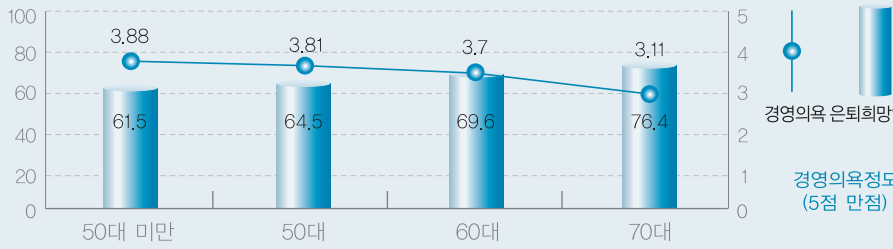
중소기업 경영자의 유형별 구성비율(%)



나. 중소기업 경영자의 경영의욕과 은퇴희망 연령

조사대상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대 · 내외적 경기불안 요인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경영의욕을 보이고 있었으나(5점 만점 기준 평균 3.8), 경영자의 연령이 60대에 이르면서부터는 경영의욕이 현격히 떨어지는 것(60대의 경우 3.7, 70대의 경우 3.11)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영자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은퇴희망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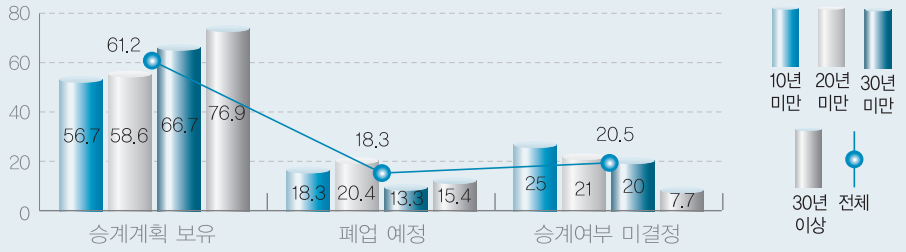
중소기업 경영자의 은퇴고려시기와 경영의욕의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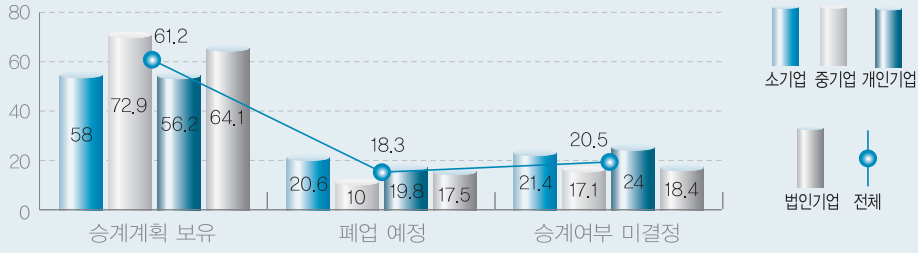
다. 가업승계 계획의 보유 현황

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실제로 가업승계계획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을까? 경영자의 은퇴를 고려한 가업승계 계획을 보유하고 있다고 대답한 경우는 전체의 61.2%에 불과했고, 가업승계 없이 폐업하겠다고 대답한 경우가 18.3%, 가업승계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못하였다고 대답한 비율이 20.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업승계계획의 보유 현황(%) – 업력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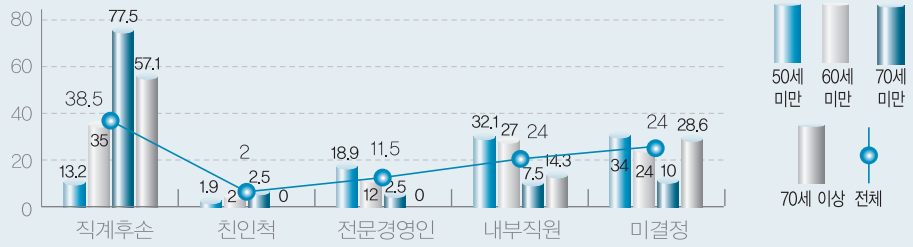
가업승계계획의 보유 현황(%) – 기업형태 기준



위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기업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고, 업력이 길어 경영상태가 좋은 기업일수록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가업승계를 고려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직계 후손을 그 승계 후보자로 고려하는 기업이 약 38.5%였는데, 경영자의 친족이 아닌 내부 임직원을 승계 후보자로 고려하는 경우도 약 24%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업승계의 대상(%) – 경영자의 연령 기준



주목할 만한 사실은 60대 미만 경영자의 경우 직계후손 이외의 자에게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이는 최근 젊은 세대들의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까닭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직계후손에게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의향이 70대 경영자보다 오히려 60대 경영자에게서 더 두드러지고, 70대의 경우 가

업승계 여부 자체를 결정하지 않은 비율이 높다는 점은 70대 경영자가 이미 적절한 가업승계의 시기를 놓쳤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2. 가업승계의 장애요인

최근 중소기업연구원이 업력 30년 이상인 중소기업 및 업력이 25년 이상이고 경영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1,879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복수응답)에 의하면 과중한 조세부담(78.2%)을 가업승계의 가장 큰 장애사유로 꼽고 있다.

다음으로는 후세대가 승계를 원하지 않거나(16.9%), 후계자의 불확실한 경영 역량(41%), 가업승계로 인한 기업 내 갈등(21.9%) 등 후계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가 지적되었고, 사업수익성 악화 우려 등의 문제(35.8%)도 지적되었다.[5]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지적하는 가업승계의 장애요인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조세부담

기업의 주식이나 사업용 재산 등을 후계자에게 상속 내지 증여할

5. 신상철, 가업승계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2007), 19면 이하 참조

경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재산의 가액에 따라 최하 10%(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일 경우)에서 최대 50%(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까지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세율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현금을 확보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세금 때문에 주식 내지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고, 특히 주식을 처분할 경우 경영권의 승계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 … 대구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K(44) 대표. 그는 "3년 전 가업승계 과정을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K 대표의 부친은 3년 전 갑자기 악화된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부친 사망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그는 상속세에 대해 무지했고 허둥거릴 수밖에 없었다.

… 부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은 100억원 상당. 그나마 배우자 공제와 자녀공제 등 기초공제를 많이 받아 상속세는 15억원 안팎으로 나왔다. 하지만 그에게는 15억원도 큰 돈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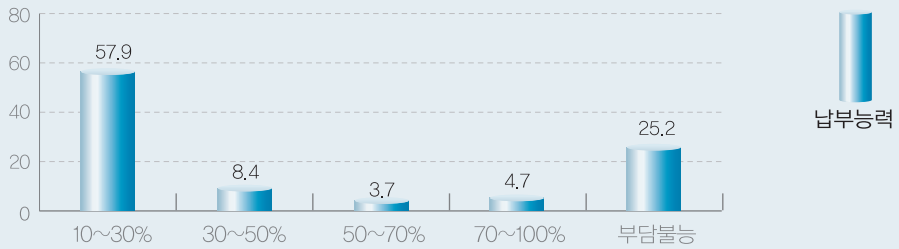
당장 이 돈을 납부할 현금이 없었던 것. K 대표는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이것도 모자라 세무서에 주식을 현물 납부했다(올 1월 세제개편에 따르면 상속 · 증여 때 물납 대상에서 비상장 주식을 제외했지만 상속의 경

우 다른 재산이 없을 때 허용하고 있다).

K 대표는 "세무서가 자산관리공사로 넘긴 우리 회사 주식 8%가 다른 사람에게 매각될 경우 경영권 위협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다"며 걱정스럽게 말했다. – 이코노미스트, 2008. 5. 20. 제938호 참조 」

최근 기업은행이 업력 20년 이상이고, 경영자의 연령이 55세 이상인 20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가업승계시 발생하게 될 세금의 70% 이상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고 대답한 기업이 전체의 약 4.7%에 불과하였다.[6]

가업승계관련 상속세 · 증여세의 부담능력



이렇듯 과중한 조세부담은 경영자의 경영의욕을 저하시키고, 나아가 기업의 존속마저 위태롭게 할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6.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연구원 · 기은경제연구소, 명품 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 방안(2008. 5.), 20면 참조

나. 후계자 선정

후계자 선정의 논의는 곧 경영자의 은퇴를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경영자들이 매우 심리적으로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이다. 우선 경영자의 은퇴를 후계자가 먼저 나서서 이야기 하기가 어렵고, 후계자 선정과정에서 마찰이 불거질 경우 본래의 의도와 달리 기업의 경영이 어려워질 우려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대부분이 "가족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후계자 선정의 문제는 보다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7]

예컨대 직계혈족을 비롯한 경영자의 친족 내에서 후계자를 선정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것은 다른 방법에 비해 회사 내·외부 관계자들이 받아들이기에 심리적으로 수월하고, 차기 경영자가 기업의 창업이념 등을 이어받아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에도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능력이나 경륜이 부족한 사람이 단지 가족 구성원이라는 이유 하나로 핵심적인 지위에 등용된다면, 비가족 구성원으로서 오랫동안 근무해온 고참 직원들은 직장생활에 대한 회의에 빠지게 되고 급기야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

7. 남영호 · 박근서, 가족기업론(제2판), 청목출판사, 2008, 39면 이하 참조

많은 가족기업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 즉 단지 가족 구성원에게만 최고의 지위까지 허용되는 경향은 몇 가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잠재적인 리더의 수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직위와 직책 등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비가족 구성원들이 가족 구성원과의 차별적인 보상체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다면, 결국 다양한 형태로 그 갈등이 표출되어 사업의 지속성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후계자의 선정은 가업승계의 시작임과 동시에 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 경영자로서는 후계자가 승계 받은 기업을 무리 없이 경영해 나아갈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고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경영자는 자신의 건강에 이상이 없는 동안에는 가업승계의 논의 자체를 꺼려하고, 당장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가업승계 계획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기업의 경영은 축적된 노하우와 다양한 경험을 필요로 하므로, 경영상의 혼란없이 원만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후계자 교육을 통해 미연에 갈등을 조정해 둘 필요가 있다.

다. 거래처 유지 등 사업상의 이유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가 스스로 개척한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가 사업의 존속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경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해당 기업의 신뢰도까지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원만한 가업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거래처와의 관계 문제로 인하여 사업의 수익성이 갑자기 악화될 우려가 높다.

가업승계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회사 내부 혹은 거래처의 혼란을 우려하여 가업승계를 비밀리에 진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개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으로 충분한 시간 동안 진행되어야 한다.

때문에 단지 후계자를 기업 내부의 경영에만 참여시킬 것이 아니라, 기업의 장기적인 가업승계 계획을 거래처에도 미리 알리고 후계자를 직접 거래처에 소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 경영자가 구축한 신뢰관계가 후계자의 가업승계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Chapter
03

가업승계 대책의 수립

1. 가업승계 대책의 흐름 및 접근 · · · · · · · · · · · · · 20
2. 전문경영인 도입 · · · · · · · · · · · · · · · · · · · 36
3. 가업승계 계획의 예시 · · · · · · · · · · · · · · · · 39

1. 가업승계 대책의 흐름 및 접근

가. 가업승계 대책의 필요성

(1) 폐업의 위험

가업승계 대책을 세우지 않았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가장 큰 위협은 바로 기업의 폐업이다. 중소기업 강국인 일본의 경우 연간 약 7만개의 회사가 "후계자가 없다"라는 이유로 폐업한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고된 바 있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앞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결과에 의하더라도, 기업의 업력이 높고 경영자가 고령일수록 후계자의 부재가 가장 중요한 폐업사유로 부각되고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중소기업의 경우 경영자 1인에 대한 기업의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대기업과는 그 사정이 다르다. 때문에 경영자의 고령화로 인하여 경영판단능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거나 경영자의 갑작스러운 사망 등으로 후계자의 경영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루어진다면 기업의 존속 자체가 위태로워지게 되고, 결국 폐업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국내 전체 사업체의 99.9%에 이

르는 중소기업의 폐업위협은 단순히 경영자 개인과 그 가족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다.

(2) 가업승계 대책을 세우지 않아 회사에 위기가 찾아온 사례

가업승계의 대책을 세우지 않아 결국 회사에 위기가 찾아오는 사례는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도록 하자.

A회사는 창업자 김창업(65세)이 만든 회사로 자동차 정비부품 시장에서 매출액 선두를 달리고 있는 알찬 회사이다. 김창업에게는 해외에서 MBA까지 마친 장남 김장남(35세)과 금융회사에 다니는 차남 김차남(33세),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막내 김막내(여, 30세)가 있다.

[사례 1]

- 김창업은 해외에서 MBA까지 마친 김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기로 마음먹고, 회사 대표의 지위를 물려주었다.
- 김장남은 회사 대표가 된 후, 선진경영기법을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김창업과 수십 년간 함께 일해온 직원들을 감원시키고, 해외에서 같이 공부한 친구들을 회사의 임원으로 영입하였다.
- 감원된 직원들은 A회사와 동종의 B회사를 창업하였고, 이 과정에서 A회사의 기존 거래처 역시 B회사로 많이 옮겨가 경쟁이 심화되었다.

- 회사 내부에서도 기존 지위에 불안을 느낀 구 임원들이 회사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으면서 회사의 매출액은 눈에 띄게 떨어지기 시작했다.

- 결국, 김창업은 김장남을 회사 대표의 지위에서 물러나게 하고, 노령의 나이에 다시 경영일선으로 복귀하였으나, 사세는 이미 기울어져 버린 상태였다.

[사례 2]

- 김장남은 수년 전부터 회사에 들어와 경영수업을 받고 있었으나, 김차남과 김막내는 회사경영에는 관심이 없이 오로지 재산에만 관심을 가지고 '회사가 이익이 날 때 처분해 버릴 것'을 줄곧 주장하고 있었다. 이에 김창업은 김장남에게 회사를 물려주고, 김차남이나 김막내에게는 회사 이외의 부동산과 예금을 상속시킬 계획이었다. 김창업은 자신의 이러한 생각을 절친한 친구인 이친우에게만 털어놓은 상태였다.

- 그러던 중, 김창업은 갑작스러운 지병악화로 인해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이친우는 김창업이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자 더 늦기 전에 회사와 유산의 처리에 대하여 김창업의 유언을 받아 놓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김창업은 이미 글을 쓰거나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다만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에 대하여 고개를 끄덕일 수 있을 뿐이었다.

- 이친우는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공증인을 불러, 간병인들이 보는 앞에서 김창업이 평소에 이야기한 바와 같이 "회사는 김장남에게 물려줄 생각이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김차남에게 물려줄 생각이지? 다른 금융재산은 김막내에게 물려줄 생각이지?"라고 물었고, 김창업은 이 질문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다. 이에, 공증인은 그

자리에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유언서를 작성하였다.

- 김창업이 사망한 후 이친우는 김장남, 김차남, 김막내에게 유언장의 내용을 설명하고 상속재산을 그에 따라 나누겠다고 이야기하였다.

- 그러나, 김차남은 김창업의 유언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위 유언이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회사의 주식은 법정상속분대로 삼남매에게 나누어졌다.

- 김차남과 김막내는 김장남에게 자신들의 소유주식을 높은 가격에 인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김장남은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개인적으로 많은 대출을 받아 이를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

- 장기간에 걸친 분쟁 속에서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은 불가능했고, 결국 많은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김장남은 회사를 헐값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

[사례 3]

- A 회사는 최근 몇 년간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많은 이익을 내고 있었다. 김창업은 검소한 생활을 하면서 이익을 회사에 유보해 둔 채 회사경영에만 골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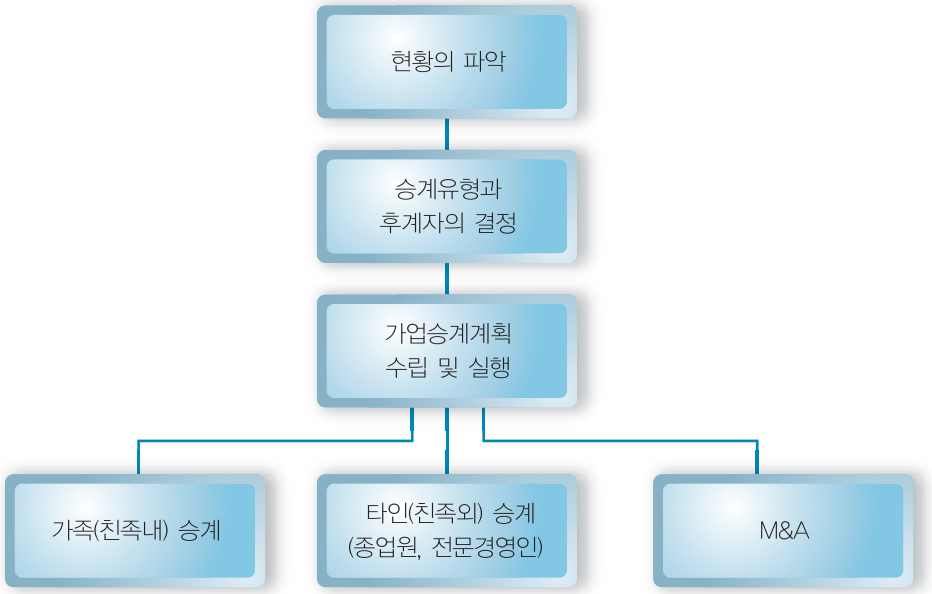
- 그러던 중 김창업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하였고, 김창업이 남긴 재산의 대부분은 A 회사의 주식이었다. 그런데 A 회사의 주식 가치가 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자, 가능한 공제를 모두 받더라도 납부해야 할 상속세만 수십 억원에 달하는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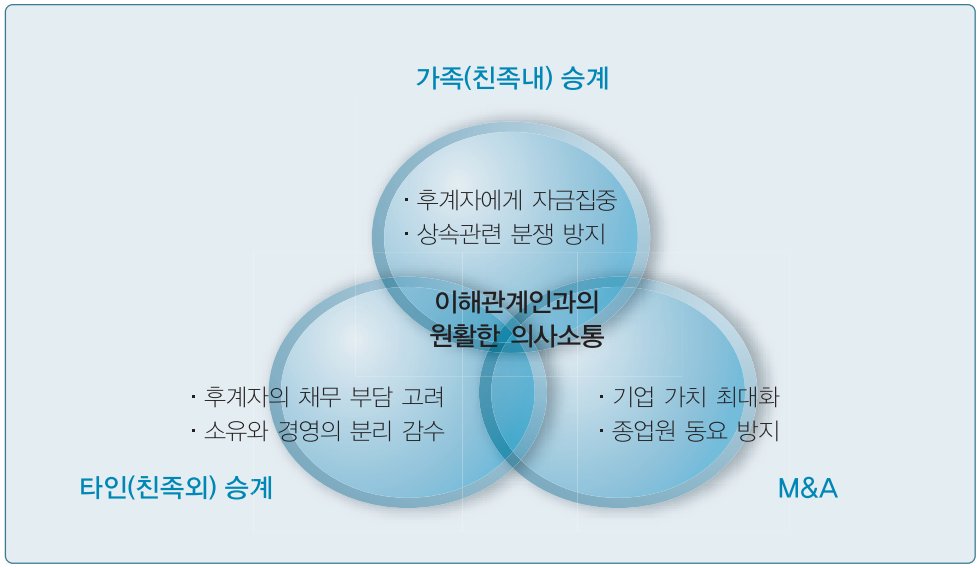
- 상속세를 납부할 별다른 재원이 없었던 김장남, 김차남, 김막내는 결국 회사의 주식 상당부분을 평소 A 회사에 눈독들이고 있던 박상장에게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그 후 박상장은 동업자 지위를 주장하며 A 회사의 임원으로 들어와 경영에 사사건건 간섭을 시작하였고, 회사를 독차지하기 위하여 기회만 노리고 있다.

이상의 사례들은 주변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것들로서, 모두 체계적인 가업승계 대책을 통하여 방지할 수 있었던 위기를 피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

물론, 격변하는 경영의 장에서 모든 위기를 사전에 예측하고 이를 예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가업승계는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예측가능한 위험이고, 예측가능한 위험요소에 대비하는 것은 위험관리의 차원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작업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나. 가업승계 대책의 흐름


현황의 파악
승계유형과
후계자의 결정
가업승계계획
수립 및 실행
가족(친족내) 승계
타인(친족외) 승계
(종업원, 전문경영인)
M&A


가족(친족내) 승계
· 후계자에게 자금집중
· 상속관련 분쟁 방지
이해관계인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 후계자의 채무 부담 고려
· 소유와 경영의 분리 감수
· 기업 가치 최대화
· 종업원 동요 방지
타인(친족외) 승계
M&A

다. 단계적 접근

(1) 현황의 파악

가업승계는 먼저 지금 현재 회사가 어떠한 상황에 놓여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회사의 경영자원, 회사의 재정과 시장전망, 경영자 자신의 재산, 후계자 후보군의 상황 등을 꼼꼼하게 체크해 나가야 한다. 현황 파악 결과에 따라 가업승계의 방법을 결정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얻어 치밀한 가업승계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황에 대한 파악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자들간의 의사소통이 어려워지고, 적절한 승계방법을 선택하기도 어려워진다. 예컨대 회사의 자금사정과 시장전망이 매우 우수함에도 친족내에서 적절한 후보자를 찾기 어렵고 경영자 스스로도 친족내 승계에 대한 집착이 없다면, 과감하게 종업원 승계 등 친족외 승계나 M&A를 통하여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거나 회사를 처분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다.

또한 회사가 일시적인 자금압박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업승계의 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영자 교체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파악할 현황

파 악 대 상	점 검 항 목
경영자원	종업원의 수, 연령별 분포 자산의 종류, 규모 현금흐름의 현황
리스크 및 전망	회사의 부채상황 회사의 경쟁력, 시장점유율 경영권 변동시 발생가능한 이해관계자(거래처, 기존 임원, 소수지분권자 등)의 관계변화 리스크
개인재산	보유 주식 현황 개인명의 부동산 현황 개인부채, 보증 등의 상황
후계자 후보	회사 경영에의 참여 여부 나이, 성격, 대인관계 등 경영소질 후보자 소유 주식 등 재산현황, 경제적 능력
조세부담 능력 기타 예상문제점	상속세, 증여세 등의 예측 조세부과에 따른 부담능력 친족들과의 분쟁 가능성 등

(2) 승계유형의 결정

가업승계는 경영자가 자신의 직계혈족 등 친족에게 기업을 승계하여 주는 "친족내 승계"와, 종업원, 전문경영인 영입 등 외부의 후계자에게 기업을 승계하여 주는 "친족외 승계", 기업인수 · 합병 등을 통하여 기업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M&A"[8]로 나눌 수 있다.

8. 아래 "제5장 M&A를 통한 가업승계" 편에서 검토할 바와 같이 M&A는 친족내 승계나 친족 외 승계에 있어서 그 구체적인 실행방법의 하나로써 활용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사업을 처분한다는 측면을 강조하여 위와 같이 분류해 본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업처분은 가업승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면이 있으나, 일단 포함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각 승계유형의 장단점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유 형	장 점	단 점
친족내 승계	경영이념 승계용이 충분한 후계자 교육기간 소유와 경영의 분리 방지 후계자에 자금지원 용이	후보자의 경영자질, 의욕 부족 우려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 재산관련 분쟁우려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제기 위험)
친족외 승계	경영의 일체성 유지 용이 전문경영인에 의한 경영의 질적 향상 가능	소유와 경영의 분리로 인한 책임 경영의식 부족 우려 후계자의 자금력 부족으로 인한 안정적 경영권확보 곤란 경영자의 개인채무보증 인계 등이 곤란할 우려
M&A	적절한 후계자가 없을 경우 경영자가 매각이익을 실현	경영의 일체성 유지 곤란 비상장회사의 경우 기업가치 평가 곤란 회사 내부 동요 우려

이들 3가지 유형을 복합적으로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부진한 사업부문을 정상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투자가 부담스럽고 상속세나 증여세의 절세를 위하여 재산을 감축할 필요성도 인정된다면, 해당 부분은 과감하게 외부에 매각함과 동시에 나머지 부분에 대한 친족내 승계를 진행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친족내 승계 + M&A).

또한 후계자가 아직 경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함에도 경영자의 건

강상의 문제 등으로 시급히 승계를 하여야 한다면, 일단 유능한 종업원 내지 임원, 혹은 외부의 전문경영인에게 일시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여 주고 장래에 후계자가 다시 경영권을 승계하는 단계적 방안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하다(친족외 승계 + 친족내 승계).

하지만 위의 어떠한 승계유형을 선택하더라도 경영자 혼자의 힘으로 이를 실제로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금융기관 등 전문가들을 통하여 회사의 현황 파악부터 승계유형의 결정, 승계계획의 추진에 이르기까지 그 일련의 과정에 대한 조언을 듣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업승계에는 단순히 세금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회사법과 금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경우가 많다.

(3) 관계자들간 의사소통의 중요성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적절한 승계방법을 결정하였더라도, 가업승계의 성공을 좌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다. 후계자 후보들은 물론, 다른 친족과 회사의 임직원, 거래처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여러 당사자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함과 동시에 이들에게 경영자의 결단을 설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가업의 승계는 개인간의 재산승계에 그치지 않고, 회사의 임직원과 거래처 등 다양한 범위의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 서로의 입장이 다른 만큼 경영자의 결단에 대한 이해관계도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인정하여야 한다.

경영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결단에 따라줄 것을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아무런 예고 없이 유언 등의 방법으로 자신의 결단을 일방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예컨대 창업자의 건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서둘러 장남에게 회사의 경영권을 모두 넘겨준 경우, 창업자와 수십 년 간 함께 회사를 이끌어 온 경험 많은 임직원들과 새로운 경영자와의 관계를 사전에 조정해 두지 않는다면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권력다툼과 그로 인한 종업원들의 이직이 발생할 수 있다. 게다가, 역시 회사경영에 뜻을 두고 있던 다른 친족들간에도 분쟁이 야기될 수 있다.

기존 경영자가 후계자 후보, 회사의 임직원, 다른 친족들간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다음 후계자를 결정하고, 자신의 결단을 미리 관계자들에게 알려 후계자가 회사의 경험 많은 임직원들로부터 경영상의 도움과 정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면, 경영권 승계로 인한 혼란과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실천적으로는 기존 임직원들로 이루어진 이사회나 자문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만하다.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과 실행은 가족으로 이루어진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있어 감정적인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의 경영자와 회사의 비전을 공유하고 회사를 이끌어온 제3자들인 기존 임원진과 함께 적절한 조직구조의 변경과 시의적절한 승계계획을 함께 궁리하고, 이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다.

가업승계 대책은 주로 절세방안을 위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감당하기 어려운 세금은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는 큰 장애물이기는 하다. 그러나 아무리 세금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관련자들 간의 의사소통 부재로 인하여 회사 자체의 존속이 어려워지거나, 1차 집단인 가족간의 화목이 깨어진다면 절세의 의미도 무색해진다. 관련자들간 의사소통을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절세 문제보다 오히려 더 중요할 수 있는 것이다.

(4) 구체적인 가업승계 계획의 수립 및 실행

구체적인 가업승계 계획의 영역은 크게 '후계자의 교육'과 '경영권 및 소유권의 이전'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가) 후계자의 교육

기업환경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자에게는 다면적인 능력과 지식습득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능력과 지식을 단기간에 체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국내외 유수기업들은 다양한 후계자 육성 프로그램을 통하여 후계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를 제대로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에는 중소기업중앙회는 물론 대학과 금융기관이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양한 후계자 양성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 참여를 통하여 경영 승계자들 사이의 인맥 형성을 지원하고 유익한 정보교환을 장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경영에 대한 이론적 교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소기업을 승계받을 후계자에게 있어 부족한 것은 이론적인 무장보다 오히려 현장경험이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들여 후계자가 영업 등 사내 여러 부서에서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습득하게 하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면 제한된 범위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지위에 앉혀 리더로서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 때, 가업승계 계획과 연동된 중장기 전략 수행과정상 핵심

적이고 중요한 임직원의 직무영역을 파악하고, 후계자의 수행할 경영전략을 고려한 직무 및 조직의 재설계를 통하여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은 현 경영자로부터 도제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를 직접 창업하고 경영하여 온 당사자로부터 직접받는 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습득을 넘어서서 경영이념 등 보다 정신적 · 문화적인 차원에까지 이를 수 있으므로 그 효과가 높다.

「 … “작은 규모의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어느날 갑자기 기업을 물려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10년을 내다보고 후계자를 기르며 준비하는게 중요합니다”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에 있는 금형전문업체 G정공의 P대표(61)는 “밑바닥서부터 혹독하게 훑으면서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내회사, 내 직원이라는 애착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회사의 매출은 연평균 70억원 수준. 제품 전량을 수출한다. 1990년 창업한 뒤 기술개발과 거래 확대에만 전념해왔던 P대표는 2006년부터 가업을 물려주는 것을 고민하기 시작했다. 가업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후계자 양성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둘째 아들(30)을 지난해 입사시켰다. 현장에서 쇠 깎는 것부터 금형틀 짜기까지 각종 기술을 도제식으로 직접 가르친다.

P대표는 해외 출장을 갈 때 둘째 아들과 함께 간다. 바이어들 기분 맞추는 요령을 익히는 것은 물론 긴급상황별 임기응변 능력도 키우기 위해서다. P대표는 "지금부터 하나씩 배워놔야 거래처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P대표는 아들에게 작업장 청소도 시키고 전화응대 하는 법까지 일일이 알려준다. 둘째 아들은 "혹독한 트레이닝을 받으면서 거의 매일같이 야단맞는다"며 "고생스럽지만 보람도 크다"고 말했다.

P대표는 차남에게 앞으로 최소 5년간 기술을 더 가르칠 계획이다. 저녁에는 대학과 금융기관이 연계한 중소기업 후계자 양성프로그램에도 보내고,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세제와 조직 운영 관련 교육프로그램도 밟게 할 계획이다. 가업승계의 선진국인 일본에 기술연수 및 유학도 보낼 계획이다. … 그는 "10년 뒤 물려 줄 계획이지만 그릇이 안된다면 과감히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경제신문 2008. 8. 7. 기사 참조 」

(나) 경영권 및 소유권의 이전

경영권 및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가업승계가 본격적인 실천의 단계로 진행됨을 의미한다. 그런데,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지 아

니하고 친족내에서 승계가 이루어지는 통상적인 중소기업의 상황에서는 경영권 이전과 관련된 사항은 후계자의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가업승계 대책의 중점은 소유권의 이전을 떠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소유권 이전의 측면'에서는, 상속 및 증여와 관련한 민법과 세법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올바른 가업승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먼저, 가업승계 대책의 중점은 절세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후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세금이 부과된다면 실질적으로 가업의 유지가 불가능해 지거나 어려워질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와 관련된 절세방안에 대하여도 그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 둘 필요가 있다(이 점에 관하여 제4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한편, 가업승계와 관련된 민법이나 상법 제도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이 원하는 형태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못할 위험이 있다. 예컨대, 현행법상 동순위의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동일한 권리를 가지는 것이 원칙이다.

따라서 가업승계의 핵심요소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의 이전에 있어서도 후계자로 지명된 자식과 전혀 별개의 길을 가고 있던 자식 모

두 원칙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된다(극단적인 경우로 연락이 끊긴 이복 자식이 있는 경우에도 추후 자신의 신분을 증명한 후 동일한 상속분을 요구할 수 있다). 물론 유언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유언은 엄격한 법적 형식이 요구되는 까닭에 그 형식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무효가 되고, 형식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속인에게 보장된 일정 상속분(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을 침해하는 경우 분쟁이 생길 수 있다.

즉, 관련 법제도를 숙지하지 못 한다면 당초의 구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승계가 이루어 질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이 점에 관하여 제5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 전문경영인 도입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소유권은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경영권은 전문경영인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앞으로 다룰 법제도들은 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소유권의 측면과 관련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전문경영인을 회사 내에서 육성하거나, 혹은 외부에서 영입할 경우에 고려하여야 할 점은 무엇일까? 일률적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다음과 같은 점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이하는 남영호 · 박근서, 가족기업론(제2판), 청목출판사, 2008, 264면 이하 참조).

가. 회사 내의 종업원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할 경우

이미 회사 내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을 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충족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종업원 중에서 기업에 적합한 경력목표와 잠재력을 가진 사람을 선발하기 위하여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한다. 둘째, 종업권 중에서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경우 이들에게 수강료, 워크숍 및 세미나 등 외부교육의 기회는 물론 자체교육의 기회도 제공하여야 한다. 셋째, 현 경영자는 창업자의 가족만 누릴 수 있는 여러가지 혜택을 종업원에게도 제공하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종업원을 교육시킬 경우 그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단지 현 경영자를 기쁘게 하는 교육만 해서는 안된다.

전문경영인을 회사 내부에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책임과 권한에

대한 명확한 구분, 가족리더의 은퇴 등이 포함된 승계계획의 공개적인 커뮤니케이션, 최고상층부와의 정보공유가 필수적이다.

나. 회사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경우

한편, 회사 외부에서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경우, 새로운 가치관과 문화가 조직 내에 소개됨으로 인하여 긴장이나 갈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현 경영자는 이러한 긴장과 갈등을 완화시켜 기업의 경영성과를 향상시켜야 하는데, 이를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

첫째, 전문경영인으로 하여금 가족과 기업 내부의 장 · 단점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기업이나 가족이 전통적으로 유지해온 것 중에서 나쁜 점은 없애고, 유지하고 싶거나 지속시키면 좋은 점은 명확하게 알려 계승 · 발전시켜야 한다. 둘째로, 전문경영인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전문경영자로 하여금 편협한 사고가 아닌 오너처럼 넓게 생각하도록 해주는 전략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전문경영자에게 주식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이 이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현 경영자와 전문경영인은 그룹미팅, 뉴스레터, 비공식적인 식사 등을 통하여 회사의 직원들과 자주 대화를 나누어야 한다.

전문경영인이 회사에 처음 소개될 때, 현 경영자는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기대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알리고, 그에게 충분한 권한을 주어야 한다. 이는 모호함과 불확실성을 줄이는데도 도움이 된다. 영입된 대다수 전문경영인들이 실제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이 얼마 되지 않다는 점에 실망하여 회사를 떠난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3. 가업승계 계획의 예시

가업승계의 계획은 각자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다만, 하나의 예시로서 10년 후 은퇴를 고려하고 있는 A 경영인의 가업승계 계획 흐름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009년〉

- 현황의 파악 : 회사와 개인에 대한 현황을 파악
- 가족회의 : 가족에게 자신의 구상을 밝히고, 의견을 모음
- 승계유형의 결정 : 장남인 김장남에게 승계하기로 결정
-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

• 최대주주 소유주식의 할증평가가 2009. 12. 31.까지 유예되어 있음을 주의하여 사전증여에 활용

〈2010년〉

• 1차 유언서의 작성 : 만약을 대비하여, 1차 유언서를 작성

• 가업상속공제 해당 중소기업 여부, 가업영위 및 대표자 지위 유지에 필요한 기간 등을 검토 : 현행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요건이 갖추어져야 하고, 나아가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하고, 80% 이상을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함(세제개편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가업상속공제 대상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의 재직기간을 검토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도록 대비

• 김장남에 대한 후계자 교육을 시작

• 보험가입 등을 활용하여 후계자의 승계자금 내지 상속세 납부자금을 준비

〈2011년~2013년〉

• 사내에 승계계획을 발표, 기존 임원을 중심으로 한 자문단 구성

• 김장남에 대해 사내, 사외의 여러 보직에 대한 로테이션

• 창업을 하고자 하는 김차남에게는 창업자금 조세특례 제도를 활용

• 무의결권 주식 등 상법적 제도의 필요 여부를 검토

〈2014년~2015년〉

- 김장남에게 특정 업무의 책임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 2차 유언서의 작성 : 1차 유언서 작성과 달라진 사항을 반영하여 2차 유언서 작성
- 비상장주식을 증여하기 위해서는 평가기준일 3년 전부터 가치평가를 대비하여야 함
  : 배당 등을 활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절감은 물론, 은퇴자금을 마련하도록 함
- 거래처, 금융기관 등에 승계계획을 발표

〈2016년~2017년〉

- 본격적인 경영권 이전

〈2018년〉

- 은퇴
- 상속관련 절세방안에 집중
- 3차 유언서의 작성

Chapter
04

가업승계와 세무전략

1.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요 · · · · · · · · · · · · · · · · 44
2.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 · · · · · · · · · · 55
3.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방안 · · · · · · · 66

1. 증여세와 상속세의 개요

가. 중소기업 가업승계에서 발생하는 증여세와 상속세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위하여 후계자에게 주식 및 사업용 재산의 소유권을 승계시킬 필요가 있다. 그 대표적인 수단은 생전처분으로서의 '증여'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인데, 증여 또는 상속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할 때에는 증여세와 상속세 문제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현재 우리나라 중소기업 경영자들은 가업승계에 대한 장애요인으로서 조세부담을 첫손가락에 꼽고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 대책 역시 절세전략을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 또는 상속의 방법으로 중소기업 가업승계를 하기 전에 미리 증여세와 상속세 전반의 체계를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보다 적은 세금 비용으로도 가업승계를 실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증여세 및 상속세의 구체적인 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현행 세율은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5단계에 걸

친 누진세율이다(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은 동일하다).

현행 증여세 및 상속세의 세율은 아래 표와 같다.

현행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1천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9천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2억 4천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0%
30억원 초과	10억 4천만원 + 30억원 초과금액의 50%

다. 증여세의 과세체계

증여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증여세 과세체계 요약

항 목	계 산	설 명
증여재산	증여재산가액	•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포괄적 증여 개념)
	+ 증여추정재산가액	•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 재산취득 자금, 채무상환자금의 증여추정
	+ 증여의제재산가액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과세재산	− 비과세재산가액	• 국가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비과세
과세가액	+ 재차증여합산가액	• 증여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과세가액에 합산
	− 담보된 채무액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가액에서 차감(*부담한 채무액 상당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문제 발생)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가액에서 제외
과세표준	− 증여재산공제 등	• 배우자 6억원 / 직계존비속 3천만원(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을 경우 1천5백만원) / 기타 친족 5백만원 • 재해손실공제(신고기한내 증여재산 멸실 · 훼손된 경우 손실가액 공제) • 감정평가수수료 평가기관별 1천만원내 공제
산출세액	X 세율	• 위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참조
신고세액	+ 세대생략증여할증	•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자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손자, 손녀 등) 산출세액의 30% 상당 가산(단, 자식이 사망하여 손자, 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
	− 신고세액공제 등	•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10% 세액공제 • 합산과세시 기납부 세액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납부세액	+ 가산세 등	• 신고불성실가산세(10%, 20%, 40%)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현행 상증법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매 증여시마다 10년 이내에 증여한 가액을 합하여 상속세와 같은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증여세는 과세표준이 50만원 이상일 때부터 부과된다.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증여세의 납부세액을 실제로 계산해 보자.

증여세의 계산 사례

사 례	A는 만 30세인 자녀 B에게 현금 10억원을 증여하였다. 그 이전에 따로 증여를 한 바는 없었고, 신고기한내 신고를 하였다.
증여세의 계산	
과세표준	증여재산 : 10억원 인적공제 : 3천만원(성년의 자녀)
	과세표준 = 증여재산(10억원) – 인적공제(3천만원) ▷ 9억 7천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9억 7천만원에 대한 산출세액 9천만원 + 4억 7천만원 X 0.3 = 2억 3천 1백만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신고세액공제액 = 2억 3천 1백만원 X (1–0.1) = 2억 7백 9십만원
납부세액	2억 7백 9십만원

라. 상속세의 과세체계

상속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상속세 과세체계 요약

항 목	계 산	설 명
상속재산	상속재산가액	• 본래의 상속재산
	+ 간주상속재산가액	•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 연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단,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등에 의한 유족연금 제외)
과세재산	− 비과세재산가액	• 전사자 등에 대한 상속세 비과세 • 국가 등에 유증한 재산 등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가액	•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또는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가산
	+ 생전처분재산증여추정	• 상속개시전 1년 이내에 2억원,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의 처분재산(혹은 채무부담)의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합산
	− 공과금/장례비용/채무	• 피상속인이 납부할 공과금 • 1천만원 한도 내의 장례비(납골시설사용비용은 500만원 추가공제 가능) •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단,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
	− 과세가액불산입액	• 공익사업 출연재산, 공익신탁재산 등은 과세가액에서 제외
과세표준	− 상속공제	• 아래 '상속공제의 종류' 참조

항 목	계 산	설 명
산출세액	X 세율	• 위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참조
신고세액	+ 세대생략상속할증	•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피상속인의 자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손자, 손녀 등) 산출세액의 30% 상당 가산(단, 자식의 사망 혹은 상속결격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
	− 신고세액공제 등	•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10% 세액공제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 단기(10년내) 재상속세액공제 등
납부세액	+ 가산세 등	• 신고불성실가산세(10%, 20%, 40%) •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0.03%)

상속세 역시 증여세와 마찬가지로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계산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세에서 중요한 점은 증여세보다 공제의 범위가 넓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상속공제의 종류는 아래 표와 같다.

상속공제의 종류

종 류	공 제 금 액	비 고
기초공제	기본공제 : 2억원	
	가업상속[9] : 2억원(단, 상속재산가액이 2억원 미달시 그 가액)과 상속재산의 20%(세제개편 40%) 중 큰 금액	30억원 한도 (세제개편 최대 100억원)

9. 가업상속공제에 대해서는 추후 절세방안을 다루면서 자세히 보기로 한다.

종 류	공 제 금 액			비 고
인적공제	배우자공제	5억원 미만 : 5억원		
		5억원 이상 : 실제상속가액		30억원 한도 법정지분 한도
	기타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3천만원	
		미성년자	(20세-현재나이)×500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 있는 경우
		연로자	1인당 3천만원	상속인(배우자 제외) 및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인 자 있는 경우
금융재산공제	순금융재산(금융재산-금융부채)의 20% · 2천만원 미만 : 전액 ·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2천만원 · 1억원 이상 : 순금융재산의 20%			2억원 한도
일괄공제	· (기초공제 + 기타인적공제)보다 유리한 경우 이에 갈음하여 선택 가능 · 5억원 + 가업상속공제금액			배우자 단독상속시 적용 없음
감정평가 수수료공제	평가기관별 1천만원			
재해손실 공제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이 멸실·훼손된 경우 그 손실가액 공제			

– 세제개편은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할 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1세대 1주택 상속공제**를 신설할 예정이다(2009. 1. 1.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지금까지의 설명을 바탕으로 간단한 사례를 통하여 상속세의 납부세액을 실제로 계산해 보자.

상속세 계산 사례

사례	중소기업 경영자인 A에게는 배우자 S 및 3명의 자녀(B: 만 30세, C : 25세, D : 18세)가 있으며, 30억원의 유산을 남긴 채 사망하였다. A에게는 채무가 6억원이 있었다. 한편, A는 사망 1년 전에 자녀 B에게 현금 3억원을 증여하였다(실제 상속이 법정지분대로 이루어짐을 전제).
상속세의 계산	
과세표준	**상속세과세가액** 30억원 + 3억원(생전 증여) − 6억원(채무) = 27억원 · 기초공제 : 2억원 · 배우자공제 : 9억원(27억원×3/9[10]) · 기타 인적공제 1억원 − 자녀공제 : 9,000만원(3,000만원 ×3명) − 미성년자(D) 공제 : 1,000만원(500만원 × 2년) · 일괄공제 : 5억원 → 일괄공제(5억원) 〉 기초공제(2억원) + 기타 인적공제(1억원) : 일괄공제 적용이 유리 **상속공제합계 : 14억원(배우자공제 + 일괄공제)**
	과세표준 = 상속기초재산(27억원) − 상속공제(14억원) = 13억원
산출세액	과세표준 13억원에 대한 산출세액 2억 4천만원 + 3억원 X 0.4 = 3억 6천만원
결정세액	산출세액 − 기납부증여세액공제액 − 신고세액공제액 = (3억 6천만원 − 4천 4백만원[11]) X (1−0.1) = 2억 8천 4백 4십만원
납부세액	2억 8천 4백 4십만원

10. 상속인들의 상속분은 B:C:D:S=1:1:1:1.5=2/9 : 2/9 : 2/9 : 3/9
11. 증여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다.

마. 증여세와 상속세의 납부방법

(1) 증여세와 상속세의 신고

증여세의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상속세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에 각 세금의 과세가액과 과세표준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증여세의 경우 3월 이내, 상속세의 경우 6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를 통보한다.

(2) 증여세와 상속세의 납부

증여세와 상속세는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나, 비상장주식 또는 부동산을 증여 내지 상속 받은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서, ① 분납, ② 연부연납, ③ 물납제도가 있다.

분납과 연부연납은 당장 현금이 부족한 경우 세금을 나누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말하고, 물납은 현금이 아닌 재산 자체를 세금의 비율만큼 그대로 납부하는 것을 뜻한다.

(가) 분납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다. 당해 세금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 분납이 가능하다.

분납은 어디까지나 현금납부를 전제로 하고,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분납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나) 연부연납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인 연부연납은 그 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신청인이 신청한 기간 동안 세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는데, 각 회기의 납부금액은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가업상속의 경우에는 허가일로부터 2년 거치 후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납할 수 있는데, 특히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의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3년 거치 후 1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납이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과중한 세금 때문에 기업의 현금유동성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미납부한 세금에 대하여 연 5%의 이자를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고 납세담보도 제공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 물납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과세대상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위 부동산과 유가증권을 현금 대신 세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물납은 현금이 부족한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기는 하나, 평가액에 따라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부동산을 물납할 경우 수납가액이 상속세 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매매시가가 아닌 공시지가가 되기 때문에[12] 물납을 하기 보다는 매각하여 그 대금을 납부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2008. 1. 1.부터 원칙적으로 물납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다만, 상속의 경우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물납이 인정된다.

12. 이에 대해서는 아래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에서 자세히 다룬다.

2. 증여재산 및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증여재산과 상속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산정함에 있어 핵심사항 중 하나이다. ① 원칙적으로 증여재산 또는 상속재산은 '시가'로 평가하여 재산가액을 결정한다. 그런데 시가는 항상 일정한 것이 아니고, 그 재산과 관련된 경제적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화하는 성질이 있어 이를 산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서 상증법은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 그 사유와 연관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고 있다. 그리고 ② 시가로 간주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조차 발생하지 않아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한다.

가. 원칙 – 시가에 의한 평가

상증법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시가"로 정의하고 있다(상증법 제60조 제2항). 이는 ① 주관적인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②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어야 하며, ③ 그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고, ④ 그 기준시점은 재산

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시가를 이렇게 보면 무엇보다도 당해 평가대상 재산의 시장성이 풍부하다는 것과 동종재산의 등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시장성이 풍부한 동종 물건의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가액만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정확한 시가를 확인하기는 어려우므로 상증법은 일정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관련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고 있다.

즉, 상속개시일 전후 6월 또는 증여일 전후 3월 이내에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상증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 2이상의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 그 평균액
- 당해 재산에 대한 수용 · 경매 · 공매 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또한, 상증법은 “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

의주식이나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에는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합계 4개월)의 평균 종가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나. 보충적 평가방법

정확한 시가를 확인할 수 없고 시가로 간주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조차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증법 제61조 이하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

(1) 부동산의 평가

(가) 토 지

토지는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평가한 금액이 평가 기준이 된다.

(나) 건 물

건물은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 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함)에 대하여는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주 택

주택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이 평가 기준이다.

(2)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선박 · 항공기 · 차륜 · 기계장비 및 입목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입목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재산을 처분할 경우 다시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만약 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장부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 의한 시가표준액이 평가 기준이 된다.

"상품 · 제품 또는 그 원재료, 기타 유형재산" 등은 이를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으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에 따라 평가한다. "판매용이 아닌 서화 · 골동품"은 2인 이상의 전문가가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이 평가기준이 된다.

(3) 유가증권 등의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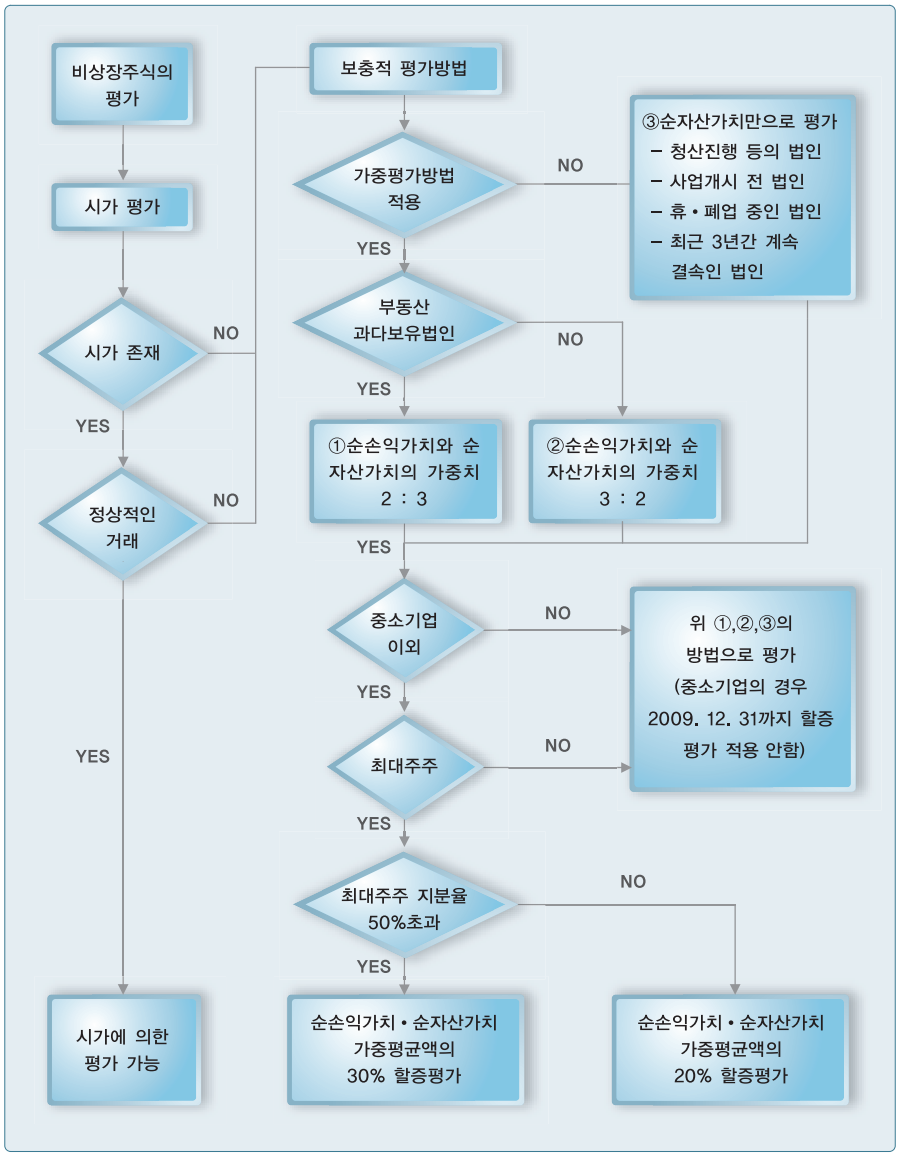
상장주식 등은 상속일 또는 증여일 전후 각 2개월(합계 4개월)의 평균 종가액을 "시가"로 본다는 점은 앞서 살핀 바와 같고, 중소기업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아래에서 따로 살핀다.

(4) 기타 재산의 평가

상증법에서는 그 외에도 영업권, 특허권 등 무체재산권의 평가,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의 평가,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 등에 관하여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비상장주식의 평가체계[13]



13. 이광재, 상속·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08, 1443면 참조

(1) 개 요

비상장법인의 주식 역시 증여 내지 상속 당시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비상장주식의 경우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매매의 실례가 거의 없어 시가의 산정이 어렵고, 납세의무자가 일방적으로 매매실례를 주장하거나 시가감정을 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객관적인 시가로 인정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은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그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2) 보충적 평가방법

〈point!〉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매우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의 체계상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중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비상장주식의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만 일단 이해하고 넘어가자.

비상장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요약

구 분	계 산 방 법	
1주당 순손익가치(①)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10%)	
1주당 순자산가치(②)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1주당 평가액	일반법인	1주당 평가액 = (① X 3 + ② X 2) ÷ 5
	부동산과다 보유법인	1주당 평가액 = (① X 2 + ② X 3) ÷ 5
	폐업 법인 등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②)

(가) 법인 유형별 평가체계

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한다.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1주당 순자산가치를 그대로 1주당 평가액으로 사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평가대상 법인의 청산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법인의 주식
- 사업개시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과 휴 · 폐업중에 있는 법인의 주식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손금의 총액이 그 사업연도에 속하거나 속하게 될 익금의 총액을 초과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법인 유형별 평가체계

■ **일반법인**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3 + 1주당 순자산가치 X 2) ÷ 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X 2 + 1주당 순자산가치 X 3) ÷ 5

■ **폐업법인 등**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자산가치

(나) 1주당 순손익가치의 계산

1)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1주당 순손익가치는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순손익가치환원율: 10%)로 나누어 계산한다.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의 계산

$$\text{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frac{A \times 3 + B \times 2 + C \times 1}{6}$$

A :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 : 평가기준일 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 : 평가기준일 전전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2) 순손익액의 계산

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그 소득계산에 있어 익금불산입 되었던 각종 비용 등을 가산하고, 손금불산입 되었던 각종 비용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다. 평가대상 법인의 실제 수익·비용을 기초로 평가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이 조세정책목적상 익금불산입 하였던 익금항목과 손금불산입 하였던 손금항목을 가산 또는 감산하는 것이다.

(다) 1주당 순자산가치의 계산

1주당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법인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text{1주당 순자산가치} = \frac{\text{평가기준일 현재의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text{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라)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평가

일반적으로 최대주주의 소유주식은 일반주주의 소유주식보다 높은 가액으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주주의 지분율 규

모에 따라 지분율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 그 가액의 20%(중소기업의 경우 10%)를 가산하여 평가하고, 최대주주의 지분율이 50%를 초과할 경우에는 당해 주식의 평가액에 그 가액의 30%(중소기업의 경우 15%)를 가산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최대주주의 지분율 계산은 상속일 또는 증여일로부터 1년 내 양도 또는 증여한 주식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그러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포함한 일정한 주식에 대하여는 할증평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2009. 12. 31.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 받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다.

(마) 정 리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평가기준일 전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 특히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되므로,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 수준에 따라 그 가치평가에 많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3. 가업승계 관련 증여세 및 상속세 절세방안

가. 증여 및 상속 관련 절세방안의 개관

전문적인 세법지식을 갖춘 세무사나 회계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상속세 및 증여세(이하, '상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상증세의 타겟인 고액자산가들은 상증세를 절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새로운 방안을 고안해 왔고, 그 반대선상에 있는 과세관청은 그러한 고액자산가들이 상증세를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증법에 여러가지 조세회피 방지 규정들을 두게 되었는데,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 상증법은 그 어느 세법보다 복잡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는 새로운 거래형태를 통하여 상증세를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2003년도 말에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였다.

증여세 완전포괄주의란 어떠한 거래형태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얻는다면 증여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으로서,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개인이 무상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바가 있다면 그러한

경제적 이익은 모두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이하에서,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제시하는 절세방안은 어떤 획기적인 절세방안은 아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상증세율 자체가 다른 세율보다 현저히 높아 상증세를 줄이는 것이 일차적인 목표가 되었지만, 최근의 세제개편을 통하여 가업상속 공제확대와 요건완화 등 가업승계 지원제도가 실시될 예정인 바,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절세와 탈세의 경계를 오가는 복잡한 구조의 방법을 택할 이유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증세의 체계 자체가 복잡하고,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로 인하여 과다한 세금을 납부하는 불이익을 피한다는 측면에서 상증세 절세방안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

나. 중 · 장기적 관점의 절세방안

(1) 중 · 장기적 절세방안의 필요성

상증세를 절감할 수 있는 절세방안은 크게 중 · 장기적 절세방안과 단기적인 절세방안이 있다. 흔히, 절세방안이라고 하면 단기적인 절세방안을 떠올리기 쉽다. 그러나,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단기적인

절세방안으로 상증세를 획기적으로 절감하기란 거의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1세대가 2세대에게 가업을 물려주면서 그에 따른 상증세를 절감하려면, 가업승계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시간을 두고 접근하여야만 할 것이다. 여기서 중·장기적 절세방안이라 함은 적어도 5년 내지 10년을 내다보고 가업을 어떻게 승계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2) 중·장기적 절세방안

(가) 사전증여 방법의 활용

1) 사전증여 방법의 필요성

일반적으로, 중·장기적 절세방안 중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방법은 1세대가 사망하기 오래 전부터 2세대에게 가업을 비롯한 부동산, 주식, 현금 등을 증여하는 방법이다.

그러한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 까닭은 현금이나 부동산, 주식 등은 대부분의 경우 미래가치가 현재가치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장래에 상속하는 것보다 조세부담이 훨씬 적어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부모가 현재시점에 예금 1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하게 되면, 자식은 현재 시점에서 예금 1억원에 대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된다.

이때, 증여세 과세표준은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3,000만원 공제를 제외한 7,000만원이 되고, 자식은 7,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증여세율 10%를 곱한 금액인 700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면 된다.

그런데, 부모가 현재시점에 예금 1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하지 않고 10년 동안 자금을 불린 후에 증여한다고 생각해 보자. 예컨대, 부모가 예금 1억원을 가지고 연간 수익율이 10%인 펀드에 가입하였다고 하면, 10년 후에는 1억원이 2억6천만원 가량 되어, 부모는 10년 후에 2억 6천만원을 증여하게 된다.

이 경우, 자식은 2억 6천만원을 증여받은 것이 되어 무려 3천 6백만원 정도의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시점에서 예금 1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한 후 자식이 똑같이 연간 수익율이 10%인 펀드에 가입한 경우와 비교해 보면 엄청난 차이가 되는 것이다.

위 예는, 1세대가 2세대에게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면 얼마만큼 증여세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는,

가업승계와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이다.

1세대가 사전에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주식을 2세대에게 증여하면, 2세대는 회사가 성장하기 전에 낮은 가치를 증여 받은 것으로 취급되어 그만큼 낮은 증여세를 부담하면 된다.

그러나, 1세대가 사전에 가업을 증여하지 않고 회사를 크게 성장시킨 후에 2세대에게 증여하게 되면, 2세대는 높은 가치를 갖는 회사주식을 증여 받은 것이 되어 그만큼 많은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사전증여에 관한 합산과세와 관련

상증법은 상속개시일(혹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혹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어, 1세대가 2세대에게 8년 전에 재산을 증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혹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초 2세대가 부담하였던 증여세는 공제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상증세가 두 번 과세되지는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10년 이전에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장기적인 상속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단, 뒤에서 살필 가업승계 조세특례나 창업자금 조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재산은 10년 이전에 증여된 부분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이 된다).

그러나, 10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전증여에는 놓쳐서는 안 될 실익이 존재한다. 1세대가 가치가 100원인 A라는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하고 그 이후 수년 후에 사망하였고, 현재시점에 A주식의 가치는 1,000원이라고 가정하여 보자. 물론, 2세대는 당초 증여 받았던 A 주식에 관하여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담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A주식의 가치는 현재시점의 가치인 1,000원이 아니라 '당초 증여 받은 시점의 가치'인 100원으로 평가된다. 결국, 2세대는 A주식을 사전에 증여 받음으로써, 상속재산을 신고할 당시의 가치인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담하면 되고 그 결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14]

14. 혼동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은 '상속분'과 관련하여 특별수익자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의 가치산정이 상속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과 사전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될 경우 그 가액산정이 증여당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것이다. '상속분'과 관련될 경우에는 10년의 기간제한 역시 적용되지 아니한다(자세한 것은 상속법 관련 부분 참조).

사전증여의 조세절감효과

구 분	내 용
자식이 상속 개시시점 10년 이전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식은 재산가치가 낮은 시점에 재산을 증여받게 되므로, 그만큼 증여세가 절감될 수 있고 상속세에 합산과세 되지도 않는다.
자식이 상속 개시시점 10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자식은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에 관해서는 상속세에 합산하여 과세되나, 당초 납부하였던 증여세는 공제되고 아울러 재산가치가 낮았던 당초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재산가액이 평가되므로 그만큼 상속세를 절감할 수 있다.

(나)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절세방안의 고려

특히, 1세대가 2세대에게 회사의 주식을 사전에 물려주는 경우 그 회사가 성장사업이라면 절세효과는 극대화된다.

예컨대, 부모가 A라는 사업과 B라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A 사업은 향후 계속 성장할 것이 예상되고 그 수익도 만만치 않은 반면에, B 사업은 향후 사업전망이 어둡다고 가정하여 보자. 그렇다면, A 사업의 가치는 나날이 증대될 것이고 B 사업의 가치는 나날이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부모가 A 사업의 가치를 사전에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은 분명하다. 자식이 A 사업을 증여 받는다면, 장래에 크게 성장된 A 사업의 가치를 기초로 증여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시점의 A 사업의 가치에 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B 사업의 가치는 계속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굳이 자식이 B 사업을 사전에 증여받아 높은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식은 B 사업을 사전에 증여 받는 것보다 상속받는 것이 유리하다.

더욱이, 이러한 방법은 후계자에 대한 승계자금 확보의 수단으로서도 기능하게 된다. 즉, 향후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을 조속히 승계시키는 경우, 여기서 발생하는 이익은 후계자의 정당한 재산으로서 승계자금으로 사용될 수 있고, 과세당국의 자금출처 조사에 있어서도 자금출처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만일 부모가 C라는 법인을 통하여 A 사업과 B 사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고 그 중 A 사업만을 증여하고 싶을 땐 어떤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는가가 문제될 수 있다.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대표적으로는 부모는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법을 통하여 C라는 법인을 A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과 B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나누고, 그 중 A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업구조조정의 방안을 통하여 가업승계 시 절세를 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고, 여기서 핵심은 기업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향후의 사업전망이라고 하겠다.

단, 주의할 것은 상증법은 재산취득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허가, 상장 · 합병, 형질변경 등으로 인한 재산가치상승금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과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가치상승기여분 합계액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이익 역시 증여재산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다(상증법 제42조 제4항).

이 조항을 통한 실제 과세의 예가 극히 드물기는 하지만, 급성장 사업에 대하여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절세방안을 고려할 때에는 위 조항의 적용범위에 해당할 위험이 없는지를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절세방안은 장기적인 사업전망의 관점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안전하다.

다. 단기적인 절세방안

(1) 개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세 절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중 · 장기적인 절세방안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같은 중 · 장기적 계획을 세우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 또는 증여를 준비하여야 하는 경우도 흔히 일어난다.

이러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세부담 감소를 위하여 단기 절세방안을 찾아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절세방안은 현행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증세 과세체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을 기초로 하여, 자칫 무지로 인하여 상증세를 과다하게 부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가업승계와 관련된 조세혜택의 활용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활용될 수 있는 조세혜택은 크게 '가업상속공제',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등이 있다.

이들은 모두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상속세 내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일정범위의 재산을 공제하거나 경감된 세율을 적용하도록 혜택을 주는 한편, 사후관리를 통하여 혜택적용 후 해당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부여하였던 혜택을 거두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른 일반적인 상증세 절세방안과 달리 위 조세혜택은 가업승계에만 특유하게 적용되는 혜택이므로, 그 해당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가능한 한 혜택을 받는 편이 유리하다.

(가) 가업상속공제

1) 입법취지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영위한 사업이 상속인에게 상속되면서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그 가업을 상속받은 상속인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재산가액의 일정액을 공제받도록 하여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서, 세법상 가업승계 지원제도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현행 제도는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를 30억원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그러던 것을 2008년 세제개편에서는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하던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로 최대 100억원까지 공제하도록 공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였다.

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이로 인해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동 개정규정은 2009.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 가업상속공제의 내용

중소기업을 15년(세제개편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던 피상속인이 그 중소기업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 중 큰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세제개편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30억원(세제개편 최대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세제개편 최대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 2억원. 다만,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이 2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가업상속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여기서 "가업상속재산"이라 함은 다음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 개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 법인기업 :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

3) 가업상속공제의 요건

가) 피상속인이 15년(세제개편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기업의 상속일 것

여기서 말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 규정에 근거한 중소기업(아래 지원업종에 속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규모기준 이내의 기업을 말하고, 현행 조특법은 해당 기업중 상시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을 말한다.

[참고]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지원업종 비교

표준산업분류표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상속 적용대상
대 분 류	소 분 류		
1. 농업 및 임업	작물재배업(11)	O	X
	축산업(12)		
	조경수 식재 등	X	X
2. 어 업	어업 전체	O	X
3. 광 업	광업 전체	O	O
4. 제 조 업	제조업 전체	O	O
5. 전기, 가스, 수도 사업	업종 전체	X	X
6. 건 설 업	건설업 전체	O	O
7. 도매 및 소매업	도매업 전체	O	O
	소매업 전체	O	O
8.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숙박업(관광진흥법)	O	O
	일반숙박업 등, 음식점업 전체	X	음식업포함

표준산업분류표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상속 적용대상
대 분 류	소 분 류			
9. 운수업	물류산업	화물운송법, 화물취급업,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주선업, 화물포장업, 화물검수 · 형량서비스업, (항만법에 의한)예선업	O	O
	선박관리법(63929)(해운업에 의한)			
	여객운송업			
	여행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			
	주차장운영업 등		X	X
10. 통신업	전기통신업(642)		O	O
	우편 · 소포송달업(택배, 퀵)		X	X
11. 금융보험업	업종 전체(은행, 보험, 증권 등)		X	X
12. 부동산 및 임대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X	X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파렛트임대업(기타 산업용 기계장비임대업 중) *물류산업에 해당	O	O
		그 외	X	X
	그외 전체			
13. 사업 서비스업	정보처리 · 컴퓨터 운영관련업(72)		O	O
	연구 · 개발업(73)			
	엔지니어링업(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상)			
	과학 · 기술서비스업(744)			
	광고업(745)			
	전문디자인업(746)			
	포장 및 충전업(7593)			
	국제회의업(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에 해당			

표준산업분류표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상속 적용대상
대 분 류	소 분 류		
	무역전시산업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법무 · 회계서비스업(741) 시장 조사 및 경영상담업(742) 사진촬영업, 번역 등(749) 사업시설유지관리, 인력공급(751) 등	X	X
1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업종 전체	X	X
15. 교육 서비스업	기술계학원(8092) (학원의 설립 ·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O	O
	업종 전체(학교, 입시학원, 예술학원)	X	X
16. 보건 · 사회복지 사업	의료기관운영법(의료법에 의한)	O	O
	노인복지시설운영업(8611)(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보육시설	X	X
17.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영화산업(871)(영화 및 비디오 제작업, 영화 및 비디오 제작관련 서비스업, 영화배급업) *영화 및 비디오 상영업은 제외	O	O
	방송업(872)		
	공연산업(873)(자영예술가 제외)		
	뉴스제공업(881)		
	관광사업(관광진흥법상)(관광객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 외국인 전용 유흥음식점 제외)		
	도서관 · 박물관(882) 경기장운영업(883)(골프장, 스키장) 기타 오락 관련(889) (게임장, 노래방, 무도장, 도박장 등)	X	X
	폐기물처리업(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폐수처리업(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표준산업분류표		조특법상 중소기업 해당여부	가업상속 적용대상
대 분 류	소 분 류		
18.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	분뇨 등 관련사업(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O	O
	자동차정비공장운영업(자동차관리법)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정비업)		
	회원단체(91), 수리업(92)(자동차 정비 제외) 기타 서비스업(93)(이 · 미용, 욕탕 · 세탁업, 예식장, 점술업 등)	X	X
19. 가사 서비스업	가사 서비스업(요리사, 가정부, 파출부 등)	X	X
20. 국제 및 외국기관	주한외국공관, 국제연합 등	X	X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최대주주인 경우로서 친족 등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회사의 경우 40%)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80% 이상의 기간을 대표자로 재직한 경우
- '상속인이'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 ②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후, ③ 해당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이내에 대표자(대표이사 등)로 취임한 경우(세제개편은 ③ 요건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자로 취임한 경우' 로 완화)

이와 같이 상속인 1명이 당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므로, 최대주주의 주식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할 경우에는 해당 주식 전부를 상속받아야 한다. 따라서 최대주주의 주식을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 등으로 나누어서 상속받는다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다)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등의 제출

가업상속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사후관리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해당 가업용 자산의 20%(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0%) 이상을 처분한 경우.

-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 상속인이 대표이사 등으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된 경우(세제개편은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는 예외로 규정)
  -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이 유상증자 할 때 상속인의 실권 등으로 인하여 지분율이 감소되는 경우
  -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주식 등을 처분하거나 유상증자할 때 실권 등으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않게 되는 경우

상속세의 추징이 배제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 해당 가업용 자산의 처분비율 규정 관련
  - 가업용 자산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 또는 협의매수 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되거나 시설개체, 사업장 이전 등으로 처분되어, 처분자산과 같은 종류의 자산을 대체취득 하여 가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가업용 자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합병 · 분할, 통합, 개인사업의 법인전환 등 조직변경으로 인하여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로서, 조직변경 이전의 업종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고 이전된 가업용 자산을 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 내용연수가 지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경우 관련
– 가업상속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 가업상속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상속인이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관련
– 합병 · 분할 · 분할합병 등 조직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해당 법인의 사업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 할 때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로서,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
–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로서,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당초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나)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이하, "가업승계 조세특례") (조특법 제30조의 6)

1) 입법취지

가업승계 조세특례는, 중소기업 경영자의 고령화에 따라 중소기업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가업을 사전 상속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고 경제활력 증진을 도모하고자 2007. 12. 31. 상증법 개정시 도입되었다.

2)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의 부모를 포함함)로부터 해당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을 2010. 12. 31.까지 증여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내용

증여세 부담액 = (증여세 과세가액 - 5억원) X 10%

3)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요건

가) 가업의 승계방법

증여를 받는 자(수증자)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여야 한다.

나) 수증자 및 증여자의 요건

'수증자'는 18세 이상인 거주자이어야 한다. '증여자'는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영위한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한다.

다) 2010. 12. 31.까지 주식 등의 증여가 이루어져야 함

가업승계 조세특례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중소기업의 주식 등이 2010. 12. 31.까지 증여가 이루어져야 한다.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이것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 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 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업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을 취득일로 본다.

라)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함

가업승계 조세특례는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증여세 과세가액이란 원칙적으로 사전 증여분을 포함한 증여재산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한도가 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역시 단 한 번의 증여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2010. 12. 31.까지 이루어진 여러 차례의 증여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마) 주식 등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의 제출

가업승계 조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까지 “주식 등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례신청이 신고기한까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4) 가업승계 사전증여에 대한 조세특례의 특칙

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요건을 만족하여 증여된 주식 등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상증법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가업승계 주식 등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일반증여와의 합산과세 배제

상증법상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업승계 조세특례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요건에 부합하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일반증여와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는 공제금액과 적용세율이 다르고, 만일 일반증여와 가업승계 주식 등의 증여를 합산과세 한다면 가업승계 조세특례의 입법취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조세특례와의 중복적용 배제

이하에서 살펴볼 조특법상 창업자금 증여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

용받은 거주자에게는 가업승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에게는 창업자금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즉,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특례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증자가 다른 경우에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조세특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는 가업승계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차남에게는 창업자금 조세특례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5) 사후관리

가) 가업을 승계하지 않은 경우

가업승계 조세특례 규정에 따라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나) 가업을 적절한 방법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주식 등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한 수증자가 증여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부과한다.

-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해당 가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수증자가 주식 등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하지 않거나 10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거나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합병 · 분할 등 조직변경에 따른 처분으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음.
  - 증여받은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유상증자 등을 하는 과정에서 실권 등으로 수증자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해당 법인의 시설투자 · 사업규모의 확장 등에 따른 유상증자로서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실권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수증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주식처분 또는 유상증자시 실권 등으로 지분율이 낮아져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수증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수증자의 상속인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당초 수증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
-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수증자가 법률에 따른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 상 형편 등으로 가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이하, "창업자금 조세특례")(조특법 제30조의 5)

1) 입법취지

창업자금 조세특례는, 우리 나라에서 향후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진전을 대비하고 젊은 세대로의 부의 조기 이전을 통하여 경제활력을 증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2) 창업자금 조세특례의 내용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창업자금중소기업(가업상속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과 동일)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부 또는 모를 포함함)로부터 토지 · 건물 · 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창업자금"이라 함)을 2006. 1. 1.부터 2010. 12. 31.까지 증여받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3) 창업자금 조세특례의 요건

가) 수증자의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수증자)는 18세 이상의 거주자이어야 한다. 수증자의 인원 수에는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장남이 30억원을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았더라도, 차남 역시 30억원을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으로 증여받고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나) 증여자의 요건

창업자금을 증여하는 자는 증여 당시 만 60세 이상의 부모이어야 하며, 창업자금의 증여 당시 부 또는 모가 사망하여 생존해 있지 않은 경우와 사망자의 만 60세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증여하는 경우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 창업자금의 증여목적물

창업자금 조세특례 규정에서는 증여목적물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는바, 토지 · 건물 등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재산은 창업자금의 증여목적물이 될 수 없다.

창업자금의 증여목적물에서 부동산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제외하고 있는 이유는 증여시점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창업자금의 증여목적물의 예로서는 현금,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국공채나 회사채 등의 채권 등을 들 수 있다.

라) 창업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창업자금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증여받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는 증여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 합병 · 분할 · 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

로 보기 곤란한 경우

-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창업자금 사용내역을 증여세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30억원을 한도로 함

창업자금 조세특례의 증여세 과세가액은 30억원을 한도로 한다. 30억원 한도의 초과 여부는 증여자가 아니라 창업자금을 증여받는 자의 관점에서 판단한다. 그러므로 1차 창업자금의 증여시 부로부터 20억원을 증여받았다면, 2차 창업자금의 증여시에 모로부터 증여받을 수 있는 금액은 10억원이 된다.

바) 창업자금 특례신청서의 제출

창업자금 조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까지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창업자금 조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4) 창업자금 조세특례의 특칙

가)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창업자금 조세특례의 요건을 만족한 창업자금은 기간에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자금은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나) 일반증여와의 합산과세 배제

상증법상 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그러나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이는 일반증여와 창업자금 증여의 경우 공제금액과 적용세율이 다르며, 만일 일반증여와 창업자금의 증여를 합산과세 한다면 창업자금 조세특례의 입법취지가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 가업승계 조세특례와의 중복적용 배제

조특법상 창업자금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에게는 가업승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가업승계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받은 거주자에게는 창업자금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증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창업자금과 가업승계에 대한 조세특례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다. 그러나 수증자가 다른 경우에는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 조세특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는 있다. 예를 들어 장남에게는 가업승계 조세특례를 적용하고, 차남에게는 창업자금 조세특례를 각각 적용할 수 있다.

5) 사후관리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 창업자금을 증여받고 1년 이내에 창업하지 않거나,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

당할 경우 : 창업자금

- 창업자금으로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창업자금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 새로이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창업자금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당해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 이하 "창업자금 등")을 당해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당해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 등
- 창업 후 10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창업자금 등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수증자의 사망(단, 수증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당초 수증자의지위를 승계하여 창업하는 경우 등 제외)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실질적 휴업을 포함)한 경우(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여 폐업하거나, 최초 창업 이후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하여 1회에 한하여 2년(폐업의 경우에는 폐업 후 다시 개업할 때까지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휴업 또는 폐업 중 어느 하나에 한함)는 제외)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

(라) 기타 –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에는 상증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평가액을 일정율 할증하여 과세하게 된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09. 12.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기업의 영속성 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2005. 1. 1.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3) 주식이동과 관련한 절세방법

(가) 개요

가업승계와 관련된 절세방안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는 회사의 주식을 증여 · 상속함에 있어서의 절세방안이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상증법에서 주식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식가치 평가의 방법을 검토하여, 그 가치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주식이동과 관련한 절세방안의 핵심이다.

(나) 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은 유가증권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평가의 균형을 위하여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개월간(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있다.

따라서,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그 가격이 극심히 하락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가치가 곧 상증법상 주식가치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장법인의 주가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최적의 시기를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상증법은 일반적인 비상장법인의 경우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여 그 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분	가중치
① 평가기준일 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3
② 평가기준일 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2
③ 평가기준일 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순손익액	1

이때 중요한 것은 순손익가치인데 이는 직전 3개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을 기준으로 각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을 산정한 뒤 각각의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은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된 순손익액을 일정한

할인율(10%)로 나누어 산정하게 된다(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은 앞서 설명한 바 있다).

위와 같이, 상증법상 비상장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갖게 되므로, 비상장법인의 가치는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이 낮으면 낮을수록 그 가치는 낮게 평가되게 됨을 알 수 있다. 반대로, 평가기준일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당해 비상장법인의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자는 회사의 성장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어 이익이 나더라도 배당을 실시하지 않고 사내에 유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누적된 잉여금으로 인하여 법인의 자산가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가업승계시 본의 아니게 큰 세금부담을 떠안을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예컨대 경영자의 은퇴자금 마련과 가업승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미리미리 배당을 실시한다면,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떨어뜨려 절세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다.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 역시 이와 유사한 효과를 줄 수 있다.

(라) 양도소득세 주의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상증세를 절감하려고 할 때에는 추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과표나 공제의 범위가 큰 상증세로 돌리는 것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

(4) 일반적인 단기적 상증세 절세방안[15]

(가) 상속세 절세전략

1) 상속세 계산시 공제되는 채무를 면밀히 파악하여 공제받기

상속이 이루어지면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에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하여 주고 있다.

"채무"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15. 이하의 방안은 주로 국세청, 2008 세금절약가이드2에 기재된 사항들이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큰 공제항목으로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하여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가)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 미지급이자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 보증채무
  -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 연대채무
  -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하여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 임대보증금
  - 피상속인이 토지, 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다)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가 가능하므로, 공제 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 받아야 할 것이다.

한편, 채무공제의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가공 채무계약서를 작성하여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주소지관할세무서에 통보하여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금융재산보다는 부동산을 상속하는 것이 유리

상증법상의 재산평가는 상속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절세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던 예금 5억원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예금 전액인 5억원과 상속개시일까지의 미수이자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다.

그러나, 시가 5억원에 상당하는 부동산을 상속하게 되면, 상증법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시지가, 국세청 기준시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통상 시가의 약 80% 이하의 수준으로 평가되고, 이에 따라 시가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한편, 2004. 1. 1. 이후부터는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미성년자 등이 증여 받은 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 · 허가 등의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부동산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시기를 결정하는 데에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3) 건물을 상속할 때에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증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상속세를 계산

할 때 보증금 상당액을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에 월세 2백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에 월세 7백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4) 사망하기 1~2년 전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

A는 오랜 지병으로 얼마 살지 못할 것 같자 자녀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본인 소유의 상가건물을 20억원에 처분하여 그 중 12억원은 거래처 채무변제 및 병원비 등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는 4자녀에게 2억원씩 나누어 주었다. 그로부터 몇 달 후에 A는 사망하였고, 자녀들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그런데 얼마 후 지방국세청에서 상속세 조사를 나와 상가건물 처분대금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소명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자

녀들은 내용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증빙도 갖추어 놓지 않아 소명을 하지 못하여 막대한 상속세를 추징당하였다.

위와 같은 예는 실제로도 무수히 일어나는 일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에만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상증법에서는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여 과세자료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하거나 상속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일정한 금액 이상을 처분한 경우에 그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구분하여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본다.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에 미달하거나 2년 이내에 5억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를 밝히지 않아도 된다.

위에서 2억원 이상인지 여부는 부동산의 경우는 총매매대금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예금의 경우는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재산종류별' 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 것을 말한다.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기타 재산

나)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

지 않는 경우

-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 피상속인의 연령 · 직업 · 경력 ·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금액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를 상속인이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따라서 상속세법에서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 전부를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처분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처분재산가액이 10억원인 경우로서 사용처 미소명금액이 3억원인 경우에는 1억원만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그러므로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특히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

는 자인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주고 받고, 무통장입금증 등 객관적인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인정을 받기가 쉽다.

5) 피상속인의 부채가 2억원 이상인 경우에도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부채도,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처 미소명 금액에서 부채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난 후 상속인이 피상속인이 생전에 차입한 부채의 사용처를 알아내고 그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춘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금전을 차입하여 사용할 때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6) 중소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

중소기업 운영자들은 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마다 개인적으로 사채 등을 빌려 일시적으로 사용한 후 변제하곤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중소기업 운영자가 갑자기 사망이라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 상속세 조사를 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2년 이내에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었다가 회수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회사에 빌려 준 금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순 가수금 반제금액이 수억원에 달하므로 회수한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평소 회사와 관련한 업무는 피상속인이 혼자서 처리하였으므로 상속인들은 그 내용을 알지 못해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 경우 세무서에서는 이 금액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추징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사실상 상속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상속세를 물어야 할까?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증법에서는 상속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기 위해 소유 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세무관서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동 자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 운영자가 회사에 자금을 빌려주면 채권이 발생한 것이 되고, 자금을 회수(회사에서는 대표이사 가수금을 반제한 것으로 처리)하면 자산(채권)을 처분한 것으로 된다. 따라서 회사에서 가수금을 반제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사용처를 밝혀야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통상 개인업체와 유사한 중소법인의 경우 회사의 자금이 부족하면 대표이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을 융통하여 쓴 후 나중에 갚곤 하는데, 회사의 회계담당자나 가족은 어디에서 자금을 빌려다 쓰고 갚았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사용처를 밝힐 수 없으므로 꼼짝없이 상속세를 물어야 한다

자금사정이 어려운 회사의 경우 1~2년간의 가수금 반제액을 합쳐 놓으면 그 금액이 매우 크므로 상속세 또한 엄청나다. 이상에서는 법인의 가수금의 경우를 예로 들었지만 가지급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법인에서 대표이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부채가 발생한 것이 되므로, 이 또한 가지급금 합계액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이면 사용처를 밝혀야 한다.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면 가수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가 과세된다.

이와 같이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기 위해서는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과 금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평소에 자금의 조달과 사용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놓아야 할 것이다.

7) 사망일에 임박해서는 재산을 처분하지 않는 것이 유리

상속개시 직전에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재산을 처분하게 되면 세법상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첫째,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전 1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의 처분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처분금액의 사용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에서 처분재산가액의 20% 상당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그러므로 부득이하게 재산을 처분하여야 한다면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둘째, 양도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상속이 개시되고 난 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이 동 부동산을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므로 보유기간이 짧아서 양도소득세가 없거나 적게 산정된다.

그러나, 상속개시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피상속인이 보유한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이 클 가능성이 많고, 그로 인해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1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개시 전에 팔게 되면 10년 동안의 가치증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을 받고 나서 1년 후에 양도하게 되면 상속인은 1년 동안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므로 양도소득세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단, 상속개시 후 6개월 내에 양도할 경우 그 거래가격이 시가로 간주되어 상속세가 늘어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8) 배우자 상속공제를 활용

부친이 연로하여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을 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공제 제도로 인해 상속세가 과세되

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하여 보자.

아래의 표와 같이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경우보다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 경우에 4억원의 세부담을 절감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구 분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지 않는 경우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금액	3,500,000,000원	3,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500,000,000원
배우자공제	500,000,000원	1,500,000,000원 ={35억 X 3/7(배우자상속지분)}
상속세 과세표준	2,500,000,000원	1,500,000,000원
상속세 산출세액	840,000,000원	440,000,000원
세부담 감소액		400,000,000원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 등록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하여 상속세 결정기한(신고기한으로부터 6월)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여야 한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종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종전의 상속세 상당액 중 일정률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9) 상속세 정상신고로 가산세 절감

상속으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한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위 기간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면 세금의 10%를 공제해 준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예를 들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1천만원의 상속세를 내야 하

는 상속인이 신고하지 않아서 세무서에서 사망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서 고지가 된 경우와 정상적으로 신고한 경우의 내야할 세금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정상신고시 납부할 세금 : ①-② = 9,000,000원

① 납부세액 : 10,000,000원

② 신고세액공제 : (1천만원×10%) = 1,000,000원

무신고시 고지된 세금 : ①+②+③ = 13,095,000원

① 납부세액 : 10,000,000원

② 신고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20% = 2,000,000원

③ 납부불성실가산세 : 1천만원 × 365 × 0.03% = 1,095,000원

그러므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 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위와 같이 30% 이상을 더 부담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인인 자식들도 잘 모르는데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빠뜨리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사람이 사망하여 사망신고를 하면 신고를 받은 행정기관

에서는 그 사실을 세무서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세무서에서는 부동산등기자료, 주식변동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수집하여 개인별로 전산처리 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까지 일괄조회 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철저히 체크하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 · 납부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빠짐없이 신고해서 가산세를 물지 않는 것도 절세의 한 방법이라 할 것이다.

10) 세대생략상속할증에 주의

민법상 일반적인 상속의 경우, 상속인은 배우자와 상속 1순위자인 직계비속이 된다. 따라서 상속에 의한 재산의 무상이전은 조부에서 부로 그리고 자의 세대로 옮겨지면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에 따라 상속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민법은 유언자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존중하여 유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상속인인 조부가 부의 세대를 건너뛰어 자의 세대에게 직접 유증을 함으로써, 2세대에서 3세대로 상속시 발생하는 상속세를 회피할 수 있다.

상증법은 이와 같이 세대생략이전을 통하여 상증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대생략이전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상증세 산출세액에 30%를 할증하여 과세하는 세대생략이전 과세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아들을 대신하여 상속을 받는 대습상속(代襲相續)인 경우에는 세대를 건너뛴 상속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반면, 상속이 개시된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재상속기간에 따라 100%에서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상속인이 나이가 많거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받더라도 세대를 건너 뛰어 상속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한지 아니면 정상적인 상속을 하고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한지를 비교해 보고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또한,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속재산이 많지 않아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세대를 건너 뛴 상속도 고려해 볼 수 있다.

11) 생명보험을 통한 상속세 납부재원의 마련

예컨대, 배우자와 아들, 딸이 있는 40대 가장 B가 30억원짜리 상가건물과 5억원짜리 아파트, 그리고 7,000만원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정도 재산이 있다면 만일 불의의 사고가 나더라도 상가임대수입으로 부인과 아들, 딸이 생활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B가 지금 사망한다고 가정하면 약 4억 4천 6백만원 정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 7,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상속세를 내려면 상가건물을 팔거나 아파트를 팔아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유족들이 임대수입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은 물거품이 되어 버린다.

이런 경우에는 생명보험을 이용하여 상속세 납부재원을 마련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을 피보험자로 하고 아들과 딸을 수익자로 하여 주계약 2억원짜리 종신보험을 2건 가입하는 것이다.

물론 사망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타게 되면 보험금도 상속재산으로 보므로 상속세가 늘어나게 되고, 앞으로 재산도 더 늘어날 것이

므로 보험계약을 할 때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계약금액을 정해야 한다.

특히 재산 대부분이 주식이나 부동산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어 매각이나 분할이 어려운 경우 생명보험을 활용하는 것은 유용한 방안이 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도 부동산만 남겨 놓고 사망함으로써 상속세를 내기 위해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처분한다던가 부동산으로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또한, 상속세는 상속인들이 연대하여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동산을 지분으로 상속받은 경우 일부 상속인은 세금을 납부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형제간에 불화를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미리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 두거나 쉽게 현금화 할 수 있는 유동자산을 확보해 두면 언제 사망하더라도 상속세를 내기 위해 재산을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재원을 마련해 줄 수 있으며, 사후에도 가족간의 화목을 지켜줄 수 있는 것이다.

12)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모를 때는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를 이용

불의의 사고로 피상속인이 갑자기 사망하였거나, 별거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경우가 있다. 특히,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예금통장 등이 타버린 경우에는 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을 파악하는데 더욱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상속세의 신고납부기한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므로, 상속인들은 고의성이 없어도 상속재산의 행방을 몰라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적기에 납부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나 금융감독원이 상속인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이 여러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시간적 ·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상속인을 대신하여 각 금융기관 등에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일괄 금융거래조회를 신청한 후, 거래 계좌가 있다고 통보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상세한 거래내역 및 계좌번호 등을 조회하여 피상속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면 된다.

가)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 확인하기

- 조회대상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
-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서울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에 직접 방문
  - 지방 : 금융감독원 각 지원(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직접 방문
- 구비서류
  -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에 사망사실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사망진단서 원본
    실종시 : 가족관계증명서 및 법원판결문(실종선고) 원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등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위임장
    위임자의 인감 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
- 기타 문의사항
  -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센터 민원상담팀 ☎ 국번없이 1332

한편,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에서는 국민이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 · 비속의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국민들에게 본인 여부만 확인이 되면 자체 전산자료를 이용하여 가까운 시 · 군 · 구청에서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현황을 알려주도록 하는 「조상땅 찾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나)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 확인하기

- 신청자격
  - 사망자의 경우 그 상속인

- 신청방법 및 장소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 · 도 및 시 · 군 · 구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피상속인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 광역시 ·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사망자 : 제적등본, 상속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기타 문의사항

–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 ☎ 02–2110–8343

세무서에서 상속세를 결정할 때는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등을 조회하여 신고누락 여부를 검증하고 있으므로, 신고시에 이를 누락하면 가산세(신고불성실 10%~40%, 납부불성실 1일 0.03%)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의심되는 부동산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국토해양부에 조회하여 상속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13) 사후대비에도 주의

상속세는 신고를 마쳤다고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다. 신고를 하고 나면 세무서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내용과 세무서에서 수집한 부동산 취득 · 양도자료, 금융재산 조회자료, 보험금 및 퇴직금 지급자료 등을 대조하여, 상속인이 누락시킨 재산은 없는지, 신고할 때 공제 받은 부채 등은 정당한지 등을 조사하여 상속세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상속세 신고서와 관련 증빙서류는 상속세를 결정할 때까지 잘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상속세가 결정되고 신고누락 및 부당공제 부분에 대하여 세금까지 추징당하였다 하여 모든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채무로 공제 받은 금액 중 상속인이 스스로의 힘으로 변제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후관리를 한다.

그러다가 채무가 변제되면 세무서는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거나 당초 신고한 채무를 가공부채로 인정하여 상증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소득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전세보증금이나 은행부채 등을 안고 부동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거나 부채를 상환할 때 자금출처 조사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놓아야 한다.

또한 상속재산가액이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인별로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현황과 상속개시 후 5년이 되는 시점의 재산현황을 파악하여 비교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주요재산의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경제상황의 변동 등에 비추어 보아 정상적인 증가규모를 현저하게 초과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증가요인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결정한 상속세액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따라서 30억 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 후 최소한 5년(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14) 기타 – 신설된 1세대 1주택 상속공제 활용

세제개편은 1주택 장기보유자의 상속세 부담을 경감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고(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당해 무주택 상속인 명의로 협의분할할 것),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직전 계속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을 상속할 경우 주택가액의 40%(5억원 한도)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도록 하였다(2009. 1. 1. 상속개시분부터 적용).

(나) 증여세 절세전략

1) 증여시 증빙구비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10년 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증여공제액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는 자녀가 성년인 경

우에는 3,000만원, 미성년인 경우에는 1,500만원, 기타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500만원이다.

그러나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하여 집을 장만할 때 사용하길 바라면서 아버지가 아들 명의로 1,600만원을 저축하였는데, 15년 후에 위 금액이 7,000만원으로 늘어났다고 가정해 보자.

저축 당시 아버지가 증여세를 신고하고 증여세 10만원을 납부하였다면 15년 후에 성년이 된 아들이 위 저축액 7,000만원을 찾아서 집을 장만하는데 사용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저축 당시에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무서에서는 아들 명의로 저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버지로 보아 아들이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하는 시점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7,000만원을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이고, 이에 따라 400만원의 증여세를 부과할 것이다.

그러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 공제액보다 약간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언제, 누구로부터, 얼마만큼을 증여받아, 증여세를 얼마나 내었는지를 알 수 있게 신고서 및 영수증을 근거로 남겨놓는 것이 좋다.

특히 법인의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다음, 신고서와 영수증을 보관해 두고 주주명부상 명의개서를 완료하여야 하며, 법인세 신고시에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중소법인의 경우 주주명부 자체를 작성 · 보존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또한 주주명부가 작성되어 있더라도 주주명부상 명의개서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주주명부 내용과 실질주주 내용이 다른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나중에 주식가치가 크게 증가된 다음에 주식을 명의신탁 해놓은 것으로 인정받게 되면 생각하지도 않았던 거액의 세금을 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증여세를 신고 · 납부하고 당해 증빙을 갖추었더라도 2004년부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의 도입에 따라 미성년자가 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주식의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해서 재산이 증가한 사유에 해당되어 증여세를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해야 한다.

2) 공시지가나 기준시가가 공시되기 전에 증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주택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주택 이외의 건물은 국세청 기준시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런데 개별공시지가, 개별(공동)주택가격 및 국세청 기준시가는 통상 1년에 한번씩 고시하므로 부동산 가액을 평가할 때는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이하 "기준가격"이라 함) 등을 적용한다.

즉, 증여일 현재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으면 새로 고시된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지만,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어 있지 않으면 이미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의 기준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동일한 연도에 동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더라도 당해연도의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증여하느냐 고시된 후에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의 크기가 달라진다.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말까지, 국세청 기준시가는 상업용건물 등의 경우는 부동산 시장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고시(2008년의 경우는 1월 1일에 고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준가격이 전년도보다 높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

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되기 전에, 전년도보다 낮게 고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가격이 고시된 후에 증여하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토지의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 고시하기 전인 5월초에 토지소재지 관할 시 · 군 · 구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토지 소유자 등에게 공람을 거친 후 5월 31일경에 확정 고시한다. 그러므로 사전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을 통하여 증여하고자 하는 토지의 공시지가를 예측할 수 있다.

상업용건물 등의 국세청 기준시가는 매년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한 후 시세변동 및 가격편차를 감안하여 시가의 80% 수준에서 결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건물 가격이 전년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면 금년도 기준시가도 상승할 것으로 보면 된다.

특히 2005년부터는 국세청 상업용건물 ·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도 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고시될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예로 봐서는 개별공시지가나 국세청 기준시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전년도보다 조금씩 높게 결정되고 있다.

따라서 부동산을 증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이 하락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시일 이전에 증여하면 세금을 조

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 개별주택가격은 토지(건물)소재지 시 · 군 · 구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해 볼 수 있으며, 국세청 기준시가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조회 · 계산」-「기준시가」를 클릭하면 고시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공동주택가격은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or.kr)에서 검색할 수 있다.

3)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등기 전에

피상속인이 유언을 하지 않고 사망을 하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 법정상속이 이루어지며, 법정상속은 지분으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공유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재산을 관리하거나 처분하는데 불편이 따르므로 공동상속인들이 협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협의분할"이라 한다.

협의분할을 하게 되면 지분에 변동이 생기게 되는데, 협의분할이 상속등기 전에 이루어졌느냐 상속등기 후에 이루어졌느냐에 따라 변동된 지분에 대한 증여세를 납부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는 특정상속인

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게 되더라도 이는 공동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므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이 확정된 후에 협의분할을 하여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부분에 상당하는 재산가액은 공동상속인 중 지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법정지분대로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상속인간 협의에 의해 상속분을 재확정하여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상속세를 신고한 경우에는 지분 변동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을 협의분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하기 전에 분할하되, 상속등기를 했다가 재분할을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경정등기를 하고 변경된 내용대로 상속세를 신고해야 상속지분 변동분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4)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거든 3개월 이내에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초 증여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반 환 시 기	증여목적물	당초증여시	반환시
신고기한 이내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	금전이외의 재산	비과세	비과세
신고기한경과 후 3월 이내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	금전이외의 재산	과 세	비과세
증여일로부터 6월 경과	금전이외의 재산	과 세	과 세

따라서 증여한 재산을 되돌려 받으려면 3개월 내에 되돌려 받아야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참고로, 이러한 경우에도 취득세와 등록세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바(예컨대, 합의해제에 따라 재산을 원상회복한 경우에 소유권을 환원받는 증여자에 대하여 취득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등록세는 납부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도 함께 고려하여 반환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5) 미성년자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

"자금출처조사"란 어떤 사람이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을 때 그 사람의 직업 · 나이 · 그 동안의 소득세 납부실적 ·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스스로의 힘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채를 상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세무서에서 소요자금의 출처를 제시하도록 하여 출처를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자금출처조사는 모든 경우마다 다 하는 것은 아니며, 10년 이내의 재산취득가액 또는 채무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

다만, 기준금액 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자금출처조사 대상자로 선정되거나 세무서에서 자금원천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취득자금의 출처를 밝혀야만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있다.

취득자금의 80% 이상을 소명하지 않으면(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이 되지 않으면) 취득자금에서 소명금액을 뺀 나머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므로, 소명자료는 최대한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항목과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구 분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금액	증빙서류
근 로 소 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퇴 직 소 득	총지급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사 업 소 득	소득금액 – 소득세상당액	소득세신고서 사본
이자 · 배당 · 기타소득	총급여액 – 원천징수세액	원천징수영수증
차 입 금	차 입 금 액	부채증명서
임 대 보 증 금	보증금 또는 전세금	임대차계약서
보유재산 처분액	처분가액 – 양도소득세등	매매계약서

특히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경우에는 사적인 차용증, 계약서, 영수증 등만 가지고는 거래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우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금통장사본, 무통장입금증 등 금융거래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6) 부채를 상환할 때에도 상환자금의 출처조사에 대비

예컨대, C가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되자 나중에 결혼하면 분가해 살도록 아들 명의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를 한 채 매입해서 1억 5천만원에 전세를 주었다고 하자.

1년쯤 지났을 때 세무서에서 아들의 아파트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나왔으나 전세계약서와 아들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해결을 하였다.

얼마 후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C가 전세금을 대신 갚아주고

아들이 아파트에 입주해 살고 있는데, 이번에는 전세금 반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이 다시 나왔다.

C의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할 때 소명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조사가 다 끝난 것으로만 알고, 전세금을 갚아 준 것에 대하여 또다시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 것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소명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C가 전세금 상당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증여세를 고지하게 된다.

상속세를 결정할 때 공제받은 채무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조사할 때에 자금의 원천으로 소명한 부채는, 상속세 과세시 또는 자금출처 조사시 세무서에서 인정해 주었다고 하여 입증이 완료된 것이 아니다.

세무서에서는 부담부증여 등에 있어 상증세를 결정하거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인정한 부채를 국세청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국세청에서는 매년 정기적으로 금융기관 등 채권자에게 채무변제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하며, 조회결과 부채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채 변제 자금을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러한 안내문을 받으면 상환자금의 출처를 소명해야 하며, 소명을

하지 못하거나 타인이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그러므로 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여 미리미리 입증서류를 챙겨두는 것이 좋다.

7) 고령인 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 ·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 · 전산입력 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상황도 함께 사후관리 한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오며,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온다.

안내문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보상금을 받은 후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통상 2~3년이 지난 후 보내오므로 이 기간 중에 처분대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다. 자금을 사용하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증빙서류를 확보하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와 취득자금의 출처에 대한 소명요구에 대하여 소명을 명확히 하지 못하면 재산을 처분한 자가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히 고령인 자가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경우 자녀들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거액의 증여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취득자금 출처에 대한 입증서류를 더욱더 철저히 갖추어 놓을 필요가 있다.

8) 자녀의 증여세를 부모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자녀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자녀가 납부해야 되는데 자녀가 소득이 없으면 세금을 납부할 능력도 없다. 현금으로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현금으로 세금을 납부하면 되지만 부동산이나 주식을 증여받으면 이를 처분하지 않는 한 세금을 납부할 방법이 없다.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낼 수도 없

으므로 결국 부모가 대신 납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자녀를 대신하여 납부한 증여세는 부모가 또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므로 당초 증여한 재산가액에 대신 납부한 증여세를 합산하여 추가로 과세되며, 여기에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가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는 정도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당초 의도대로 증여를 하되, 자녀가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 상당액만큼의 현금을 더하여 증여하면 한 번의 신고 · 납부로 증여세 문제를 깨끗이 해결할 수 있다.

9) 세대생략증여할증의 경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면 일반적인 경우 즉, 1세대에서 2세대로 재산이 이전되었다가 다시 2세대에서 3세대로 이전되는 경우에 비하여 한 단계가 생략되었으므로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든다.

이와 같이 한 세대를 건너 뛰어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법에서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액에 세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해서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일반적으로 계산한 증여세액이 1,000만원이라고 할 경우 세대를 건너 뛰어 증여하면 1,30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할증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즉, 2세대가 사망한 상태에서 1세대가 3세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와 같이 30% 할증을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세대를 건너뛰어 상속 또는 증여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상증세 부담을 감소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각각의 경우에 따른 구체적인 세부담을 계산해 봄으로써 세대생략이전의 활용 여부를 판단하여 볼 필요가 있다.





10) 증여세 정상신고로 가산세 절감

간혹, 증여는 개인간에 그것도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국세청에서 증여사실을 알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제정·시행, 세법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소속공무원을 통한 수집 등을 통하여 거의 모든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하여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등기·등록이나 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변동사항은 물론이고 각종 기관이나 단체를 통하여 거래된 자료도 대부분 국세청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러므로 증여를 받았으면 적법하게 신고를 하고 10% 세액공제

를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할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20%(또는 40%),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의 10%(또는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며, 납부할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금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기간에 1일 0.03%를 곱한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그러므로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할 자가 신고납부를 모두 하지 않으면 신고한 사람에 비하여 30% 이상을 더 부담하여야 한다. 물론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내야 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해도 공제받을 세액이 없으며,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고를 해 놓으면 나중에 증여받은 사실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해 놓는 것이 좋다.

라. 세무조사에 대한 개관

국세청은 자체 전산망 및 수집된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수시로 상증세 누락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가업을 물려주게 되면, 그러한 가업승계에 관해서도 상증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

국세청은 다양한 조사기법을 토대로 상증세 누락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가 상증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가 포착되면 그에 따라 당초 누락된 상증세 및 그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이하, 국세청의 상속세 및 증여세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한다.

(1) 상속세 관련 조사방법

(가) 부동산 관련 조사

1) 상속세 신고 누락여부 조사

국세청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전 10년간 및 상속개시일 후 1년간에 취득, 양도된 부동산을 모두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부동산 변동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 아울러 관할 세무서 등으로부터 계약서 등을 수집하거

나, 또는 부동산 거래의 상대방에게 직접 확인하기도 한다.

국세청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부동산 변동상황을 파악하여, 상속세 신고에 부동산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보다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국세청은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을 조사한 후, 당해 가등기가 부동산 매매를 위한 가등기인 경우에는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채권담보 목적의 가등기인 경우에는 그 채권액 등이 상속세 신고서에 적정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만약 상속세 신고가 누락되었다고 보이는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상속세를 추가로 부과한다.

2) 부동산 평가의 적정여부 조사

국세청은 상속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그 평가가 상증법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상속세 신고를 위한 부동산 평가가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루어져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에 기준시가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만약, 부동산 평가가 '감정평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당해 감정평가가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즉, 부동산 평가는 2개 이상의 감정가액의 평균으로 평가하여야만 하는데, 혹시 1개의 감정가액으로 한 것은 아닌지 여부,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만약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80%에 미달할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게 된다(물론, 감정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80% 이상인 경우라도 평가심의위원회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인정한다.).

위 외의 경우에도,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를 위한 부동산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양한 조사기법(담보부동산에 관한 채권잔액 조회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게 된다.

(나) 비상장주식 관련 조사

1) 상속세 신고 누락여부 조사

국세청은 그 동안 수집되었던 과세자료를 기반으로, 혹시 상속세 신고에 비상장주식이 누락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배당소득 및 근로소득 발생처가 어디

인지 여부를 파악한 뒤,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배당소득 등을 지급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국세청 전산망(TIS) 및 각 비상장법인이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기초로 파악한다.

아울러, 피상속인 및 상속인과 일정한 관련이 있는 법인에 관하여 혹시 그 법인이 다른 친인척의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위 외에도, 국세청은 증권거래세 신고서 등을 검토하여 혹시 상속세 신고에 비상장주식이 누락된 바는 없는지를 조사하게 된다.

2)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조사

국세청은 상속세 신고시 비상장주식이 상증법상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제대로 평가되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다.

일반적으로 비상장법인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하게 되는데, 만약 비상장법인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2:3으로 가중평균하게 된다.

아울러, 순손익액 계산 및 영업권 평가시에 혹시 비상장법인에 관하여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진 적은 없는지 확인하고, 당해 비상

장법인을 상대로 법인세 경정이 이루어졌다면 그러한 내용까지 반영하여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피상속인에 대하여 가수금(채무)을 부담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그러한 가수금에 관하여 제대로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져 있는지 여부 역시 확인한다.

(다) 상속개시 전 처분재산 자금의 사용처 조사

1) 처분재산의 가액 계산

국세청은 각 재산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당해 재산의 처분금액이 소명대상금액 이상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각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 부동산 및 그에 관한 권리
- 기타재산

그리하여, 상속개시 전의 피상속인의 각 재산의 처분금액이 ①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종류별로 2억원 이상인 경

우와 ②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종류별로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처분재산 자금의 사용처를 조사하게 된다.

부동산의 경우에 그 처분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등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액으로 계산하게 되는데, 계약조건에 따라 전세보증금 등을 차감한 잔액만을 수령한 경우에는 전세보증금 등을 차감한 후의 실수령액이 아니라 총 매매대금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하여 소명기준 금액 초과여부를 판단하고, 전세보증금 등은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게 된다.

현금, 예금,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인출된 금액에서 재입금된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거나 다른 사용처로부터 입금된 경우 등 재입금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하지 않는다.

2) 소명요구 방법

국세청은 소명기한을 정하여 공문으로 소명대상명세서를 첨부하여 소명을 요구한다. 소명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내역 회보 및 처분재산가액 확인이 완료되는 즉시 우선적으로 소명을 요구한다.

3) 소명자료의 검토

국세청은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상증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규정된 '객관적으로 용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재산을 처분하였고, 그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면, 국세청은 위와 같은 처분재산 자금의 사용처 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그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시키게 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재산을 처분하면 반드시 그 사용처가 어딘지에 관한 입증자료를 갖추어 둘 필요가 있다.

4) 상속 개시 전 채무부담액의 사용처 조사

국세청은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하기 전 1년 또는 2년 내에 채무를 부담한 것은 없는지를 조사한다. 예컨대, ① 임대보증금이 증가한다든지, 근저당설정 등을 통하여 채무가 증가하였든지, 또는 기타 사채 등의 채무를 부담한 것은 없는지 확인하고, ② 상속개시일 현재에는 채무가 변제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개시일 이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채무액도 규명대상에 포함한다.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를 부담한 내역을 국세청이 파악하였는데, 납세자가 당해 채무의 사용처에 관하여 소명하지 아니하면, 당해 채무부담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한다.

5) 기타 조사

위 외에도, 국세청은 금융거래조사, 채무의 적정성 조사, 배우자 상속공제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조사 등 다양한 조사기법을 활용하여 상속세 신고의 적정여부에 관하여 조사하고 있다.

(2) 주식변동 조사

국세청은 법인의 주식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상증세 누락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주주별로 지분의 변동내역 및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대주주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변동에 관한 상세한 내역을 파악한 뒤, 상증세 누락여부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당해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은 아닌지,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당해 주식취득자금을 부당히 증여받은 것은 아닌지, 아울러 주식이 변칙적으로 거래됨으로써 세대간 부가

부당히 이전된 것은 아닌지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조사의 주요 목적이다.

(가) 명의신탁 주식은 아닌지

상증법은 일정한 주식이 명의신탁되면, 그 수탁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주식의 신탁자에게는 연대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은 주식의 명의신탁여부를 파악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 명의신탁 여부를 의심하게 된다.

- 미성년자, 부녀자의 주식취득이 많은 경우
- 주주가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 주주가 제3자를 우회하여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경우 (특히, 최초 법인 설립시 주주 구성 변동 상황 고려)
- 퇴사한 임직원이 보유한 주식을 직계존비속 등에게 양도한 경우
- 자금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자가 대량으로 주식을 양수한 경우

(나) 주식취득자금의 증여추정 조사

주식취득자금을 확보할 만한 능력이 없는 주주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자금을 증여받은 것은 없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동 조사의 목적이다.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 당해 주주가 혹시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바는 없는지 여부를 의심하게 된다.

- 주주가 미성년자, 소득원이 불분명한 부녀자일 경우
- 주주가 대주주와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일 경우
- 주주가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 등일 경우
- 기타, 연령, 성별, 직업,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다) 주식 변칙거래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이전여부 조사

국세청은 조사대상 법인의 합병, 불균등 증자나 감자, 전환사채의 전환 등이 있을 경우, 그러한 일련의 거래들이 세법의 규정에 맞게 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혹시 그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이 부당히 이전된 바는 없는지 검토한다.

주식의 변칙거래로 인하여 경제적 이익이 부당히 이전되었는지 여부 및 그 규모는 상증법의 규정에 따라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복잡하고 전문적이므로 전문가와의 상담을 필요로 한다.

만약, 부모가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일정한 주식거래를 한다면, 반드시 그와 관련된 상증세 과세위험은 없는지 여부를 조세전문가에게 확인한 후에 거래를 실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자금출처 조사

(가) 자금출처 조사의 배경 및 목적

국세청이 실시하는 자금출처 조사는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취득자를 대상으로 취득자금의 조달이 정당한 소득에 의한 것인지를 검증하기 위한 세무조사이다.

세부담이 없는 부의 세습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세청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자금출처 부족자를 전산 출력한 후, 지방청의 정밀분석을 거쳐 조사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조사대상자는 수증혐의뿐만 아니라 소득탈루의 혐의에 대해서도 통합하여 조사한다.

(나) 납세자가 자금출처 조사를 받을 경우

납세자가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되면,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이 자력으로 조달하였음을 소명하여야 한다. 상증법은 납세자가 재산

취득자금 전부를 소명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규모의 재산취득자금의 출처만 소명하면, 그 나머지 일부를 소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모두 소명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

구 분	내 용
취득자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납세자가 취득자금의 출처를 80%이상 소명하면, 전체 취득자금을 소명한 것으로 봄
취득자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납세자가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 전체 취득자금을 소명한 것으로 봄.

납세자가 취득자금을 적법하게 조달하였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

- 본인 소유 재산 처분대금으로서 서류(매매계약서 등)에 의거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평가한 금액에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이자소득(인정이자는 제외), 배당소득(의제배당은 제외)은 지급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 기타소득은 지급금에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 사업소득, 부동산소득은 소득금액에서 소득세액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

- 급여소득(원천징수세액 공제)
- 퇴직소득(원천징수세액 공제)
- 재산 취득일 이전에 차용한 부채(단,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소비대차는 인정하지 아니함).
- 재산 취득일 이전에 자기재산의 대여로서 받은 전세금 및 보증금
- 상기 이외의 경우로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금액

(다) 국세청의 자금출처조사 배제기준

위와는 별도로, 국세청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금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다음의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54조).

구 분		취득재산		채무상환	총액한도
		주 택	기타재산		
세대주인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2억원	5천만원	5천만원	2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4억원	1억원		5억원
세대주가 아닌 경우	가. 30세 이상인 자	1억원	5천만원	5천만원	1억5천만원
	나. 40세 이상인 자	2억원	1억원		3억원
30세 미만인 자		5천만원	3천만원	3천만원	8천만원

다만,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 금액이 각각 상기 기준에 미달하고 아울러 총액한도도 상기 기준에 미달하여야만 자금출처 조사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아울러, 납세자가 위 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산의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을 타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점 역시 유의할 필요가 있다(단, 이 때에는 증여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한다).

Chapter
05

가업승계 관련 법제도의 이해

1. 가업승계와 관련된 민법제도 · · · · · · · · · · · · · 160
2. 상법의 활용방안 · · · · · · · · · · · · · · · · · · · 179
3. M&A를 통한 가업승계 · · · · · · · · · · · · · · · · 195

1. 가업승계와 관련된 민법제도

가. 주식 및 사업용 재산의 생전처분 : 증여와 매매

(1) 증여에 의한 주식 및 재산의 분배

(가) 증여의 의미

후계자에게 주식 및 사업용 재산을 집중시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생전증여를 통하여 주식 등의 소유권을 후계자에게 이전시키는 것이다.

증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을 말한다. 증여를 위하여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으나, 다만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경우 아직 이행이 되지 않았다면 자유롭게 해제할 수 있다.

(나) 생전증여에 있어서의 유의점

생전증여는 현 경영자의 생존 중에 권리확정을 할 수 있다는 점, 현 경영자가 그 목적에 맞는 시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유리하다. 그러나 '상속'과 관련하여 ① 유류분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고, ② 유언 등으로 보충되지 아니한다면 생

전증여를 통한 일부 재산분배가 증여가액 평가의 문제와 결부되면서 오히려 생전증여를 받은 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 상속법 관련 사항을 알아보면서 다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일단 생전증여 혹은 유언 등을 통한다고 하더라도 법에 의하여 상속인들에게 인정되는 일정한 지분은 침해할 수 없다는 점(유류분 제도)과 생전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으로 인정될 경우 선급된 생전증여분까지도 상속재산으로 총괄하여 상속분을 계산하게 된다는 점, 그리고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여시점이 아닌 상속이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생전증여액을 평가한다는 점만 알아두기로 하자.[16]

(2) 매매에 의한 주식 및 재산의 분배

친족외 승계나 자금력이 충분한 친족에게 가업을 승계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여나 상속이 아닌 매매에 의한 재산분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매매는 주식 기타 재산이전의 대가가 수수되는 경우를 말한다.

16 과세와 관련하여 사전증여분은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것과, 상속분 산정의 기준시점은 차이가 있다.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매매를 통한 주식 및 재산이전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대가와 관련한 '소득세'를 부담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있다.

매매에 의한 주식 및 재산의 분배는 후계자의 자금력이 우수할 경우 그 활용가치가 높다. 하지만 만일 후계자의 자금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저가로 매도한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하여 오히려 조세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후계자에게 직접 매수자금을 지원한다면 후계자는 매수자금과 관련한 증여세를 매도인은 소득세를 각각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

나. 상속법의 개요

(1) 상속법의 기본개념

(가) 상속과 상속인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과 동시에, 피상속인의 재산관계가 법률상 당연히 그 법정상속인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재산관계가 총체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채권 등의 적극재산 뿐 아니라 부채 등의 소극재산도 함께 승계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상회한다면 상속인

이 부채만 떠안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우리 법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통하여 상속인들을 보호한다.

상속포기는 자신의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을 말하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기는 하되 적극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예컨대 상속받은 유일한 부동산의 가액이 3억이고 부채가 5억이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을 통하여 3억까지만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민법에 따르면 사망한 자의 직계비속(자식 혹은 손자손녀 등 : 친자와 양자, 혼인 중 출생자와 혼인 외 출생자를 불문한다)이 1순위의 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부모 혹은 조부모, 외조부모 등)이 2순위의 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3순위의 상속인이 되며, 형제자매도 없는 경우 사망자의 4촌 이내 방계혈족(백숙부, 고모, 이모, 4촌형제 등)이 4순위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으면 상속포기나 상속결격이 없는한 후순위자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 배우자는 직계비속이 있을 경우 직계비속과 함께, 직계비속이 없을 경우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

이 되며,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예컨대 최부자(45세)의 사망시, 상속인은 다음과 같다.

- 아들 1, 딸 1, 아내가 있는 경우 → 아들, 딸, 아내가 공동상속인
- 딸 1, 아내, 부모가 있는 경우 → 딸, 아내가 공동상속인
- 아내와 아버지만 있는 경우 → 아내와 아버지가 공동상속인
- 아내와 여동생이 있는 경우 → 아내가 단독상속
- 미혼이고, 부모와 형이 있는 경우 → 부모가 공동상속
- 다른 가족이 없고, 삼촌만 하나 있는 경우 → 삼촌이 단독상속

(나) 법정상속분

사망한 자가 유언으로 상속인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을 특정한 바 없다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상속재산을 상속인의 수로 나눈 법정상속분이 상속인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50%를 가산한 재산을 상속받는다.

예컨대 위 최부자의 사망 시 각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분은 다음과 같다.

- 아들 1, 딸 1, 아내가 있는 경우
  → 아들 1 : 딸 1 : 아내 1.5 = 아들 2/7 : 딸 2/7 : 아내 3/7
- 딸 1, 아내, 부모가 있는 경우
  → 딸 1 : 아내 1.5 = 딸 2/5 : 아내 3/5
- 아내와 아버지만 있는 경우
  → 아버지 1 : 아내 1.5 = 아버지 2/5 : 아내 3/5
- 미혼이고, 부모와 형이 있는 경우
  → 아버지 1 : 어머니 1 = 아버지 1/2 : 어머니 1/2

(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한편 상속인들 중 사망자(피상속인)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혹은 사망자가 상속인들 중 일부에게 일정 재산에 대해 유언으로써 증여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이러한 경우를 '유증'이라고 한다).

민법은 이와 같은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생전 증여 혹은 유증을 통하여 받은 재산을 실질적으로 상속의 일종으로 본다.

즉, 사전에 증여받은 가액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달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한 부분까지만 상속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민법 제1008조. 이것은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 따로 유언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만일 유언으로서 유산 전체에 대한 처분을 하였다면 유류분 침해가 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상속분의 계산이 조금 복잡하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사례]

- A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은 14억원인데, 이 중 3억원은 처 B에게 유증하였다. A에게는 아들 C, D와 딸 E가 있었고, 아들들은 A의 생전에 각 2억원씩을 증여받았다.

  → 전체 상속재산을 실제로 남긴 재산과 생전증여를 모두 더한 18억원으로 계산하고, 이 때의 법정상속분은 B가 6억원, C · D · E는 각 4억원이다.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을 살펴보면, B는 위에서 유증받은 3억원을 공제한 3억원을, C · D는 증여받은 2억원을 공제하고 남은 2억원을, E는 달리 공제할 것이 없으므로 4억원을(3억원 + 2억원 + 2억원 + 4억원 = 14억원) 각 상속받게 된다.

(라) 기여분

상속인 중에서 일찍부터 가업에 종사하는 등 상속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가 있을 경우, 그 기여분에 해당하는 재산을 특별히 그 자의 법정상속분 외에 추가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 기여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게 된다.

(마) 상속재산의 분할

상속인이 2인 이상인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유로 된다. 따라서, 개개의 상속인들에게 자신의 상속분에 맞는 상속재산을 배분하는 것을 상속재산의 분할이라고 한다.

상속재산의 분할은 유언에 의한 지정분할 → 공동상속인들간의 협의에 따른 협의분할 →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 분할의 순서로 진행된다. 따라서 가업승계와 관련한 상속의 분쟁을 예방하고, 협의와 심판이 장기화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영상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유언을 활용하여 상속재산의 분할을 명확하게 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유언의 방법

(가) 유언의 의미와 종류

유언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방식에 따라서 행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생전에 쌍방간 "내가 죽으면 너에게 10억원을 준다"라고 합의하는 것은 죽음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증여(사인증여)일뿐 유언이 아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자유로운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한 제도이나, 그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비로소 발생하기 때문에 과연 그 내용이 유언자의 진의인지 여부를 사후에 확인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다.

때문에 우리 민법은 유언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을 엄격하게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의 효력도 부인하고 있다(민법 제1060조 참조).

우리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의 5가지이다.

자필증서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유언은 증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법상 행위능력이 없거나 제한되는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는 증인이 될 수 없고,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와 그 배우자, 직계혈족 또한 증인이 될 수 없다(민법 제1072조 참조).

증인이 될 수 없는 자가 참여한 유언은 그 전체가 무효가 된다. 증인의 수에 관하여 민법은 2인 이상의 증인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민법 제1068조 내지 1070조. 다만, 녹음에 의한 유언은 증인의 수가 법정되어 있지 않다).

가업상속에 관한 유언은 중소기업의 경영권과 재산의 분배에 대한 경영자의 최종적인 의사를 관철시키는 수단이므로 유언 방식의 선택 역시 신중해야 한다. 자칫 유언이 법정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그 효력이 부인된다면, 이로 인한 불이익이 상속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미치게 될 수 있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 작성날짜와 주소, 성명을 모두 自書한 후 날인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한다(민법 제1066조 제1항). 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유언자가 위의 각 항목

모두를 직접 수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필시키거나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면 그 효력이 없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작성례

유 언 서

유언자 000은 다음과 같이 유언을 한다.

1. 다음의 부동산은 처 000이 상속한다.
   서울 00구 00동 00의00 00아파트 00동 00호
2. 00주식회사 주식 00000주는 장남 000가 상속한다.
3. 00은행 계좌번호 00000-0000-0000인 예금은 장녀 000가 상속한다.
4. 이상을 제외한 나머지 유산 전부는 차남 000이 상속한다.
5. 유언집행자로 다음의 사람을 지정한다.
   성 명 : 000
   주 소 : 경기 00시 00구 00동 89
   연락처 : 000-0000-0000
6. 유언집행자 000에 대해 본 유언집행을 위한 예적금 등의 명의변경, 해약 및 환금 등 일체의 처분에 대한 권한을 부여한다. 이상.

위의 유언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유언자는 이 유언 전체를 직접 쓰고, 서명 날인한다.

유언 작성연월일 : 2XXX. XX. XX.
유언자 : 0 0 0 (인)
주민등록번호 : 000000 - 000000
서울 00구 00동 00의00 00아파트 00동 00호

2)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자신의 육성을 녹음하는 방식의 유언을 말한다(민법 제1067조). 구체적으로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한 뒤,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 및 자신의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유언자의 육성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고 녹음기만 있으면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유언자의 사후에 제3자에 의하여 조작될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때문에 녹음에 의한 유언은 반드시 증인이 참여해야 한다. 유언자의 육성을 그대로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민법은 특별히 증인의 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유언의 중요성과 상속인들간의 분쟁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복수의 증인을 참여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면 공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하고 이를 유언자와 증인 앞에서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의 서명(혹은 기명 · 날인)을 받아 공증인이 유언장을 보관하는 방식을 말한다(민법 제1068조).

유언자가 스스로 유언증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분실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장을 작성하여 자신의 유언취지를 명확히 해두고 싶으나, 그 내용이 사전에 공개되지 않도록 하고 싶을 때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민법 제1069조).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유언장을 엄격하게 밀봉한 다음, 밀봉한 유언장을 2인 이상의 증인 면전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하고, 밀봉된 유언장의 표면에 제출연월일을 기재하여 유언자 · 증인 모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다.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 참여 증인조차도 그 유언의 내용을 알 수가 없으므로, 유언자의 사후에 유언장의 성립에 관한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다. 때문에 민법은 위와 같이 공증인 또는 법원의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5)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의 4가지 방식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을 경우,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이를 청취한 증인이 유언자의 구술을 필기·낭독하면 유언자와 다른 증인이 확인하여 서명(또는 기명날인)한다. 그 후 증인이나 이해관계인은 급박한 사유의 종료후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물론, 이 경우 유언자는 최소한 유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사능력이 회복되어 있어야 한다.

(나) 유언집행자의 지정

유언집행자는 상속이 개시된 후 유언내용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집행절차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유언집행자는 유언자가 직접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지정유언집행자).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된다(법정유언집행자). 상속인이 없거나 사망, 결격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없게 된 경우에, 가정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도 있다(선임유언집행자).

따로 유언집행자의 지정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유언집행자가 되

나, 상속인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변호사 등 이해관계 없는 제3자를 유언집행자로 지정하여 놓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언집행자는 복수로 지정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 유언 관련 사례

- A에게는 두 아들, B · C가 있지만, 장남 B는 평소 가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의욕을 보이지도 않고 가출한 채 방탕한 생활만 계속하였다. A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이룩한 기업을 현재 부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차남 C에게 물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나 B의 반대가 두려워 미리 그 의사를 표시하지는 못했다. 어느 날 큰 교통사고를 당하여 중상을 입은 A는 마침 의식을 회복하였을 때 자신을 간호하고 있던 C에게 회사를 물려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다음 운명하였다. A의 사망 후 홀연히 나타난 B는 C에게 상속재산의 50%에 해당하는 법정상속분을 요구하였다.

우선 우리 민법은 민법이 정하는 5가지 방식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유언에 대해서 법적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 사례는 민법이 정하는 그 어떠한 유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결국 A의 유언은 효력이 없고, B · C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각자 A의 재산을 1/2씩 상속받게 된다. 만일 A가 미리 유언장을 작성할 수 없었다면, 증인 적격이 없는 C 이외의 증인 2인을 참여시킨 후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따랐어야 했다(이 책 제3장 “가업승계

대책을 세우지 않아 회사에 위기가 찾아온 사례" 사례2와 유사한 사례에서, 법원은 "이는 유언자가 구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무효로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유언은 그 형식이 법정되어 있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특히 생전에 본인의 의사를 주위 사람들에게 충분히 전달하지 못 한 결과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인들조차 미처 예상하지 못하였던 내용이 유언에 담겨 있었다면, 유언의 적법한 형식문제는 상속인들간의 분쟁으로 이어져 회사에 큰 손실과 혼란을 야기시킬 것이다.

(3) 유류분의 이해

(가) 유류분의 의미

앞서 증여와 관련하여 잠시 언급하였지만, 생전증여뿐만 아니라 유언을 통한 상속에서 가장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이다.

유류분이란, 법에 의하여 상속인에게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재산을 말한다. 유류분 제도는 개인의 재산처분에 관한 자유와 가족생활의 안정과 재산의 공평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요구를 법에 의하여 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상속인들은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직계비속과 배우자) 내지 1/3(직계존속과 형제자매)를 한도로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4촌 이내의 혈족은 유류분을 가지지 못한다).

사망자가 생전에 후계자에게 재산의 상당부분을 증여하거나 유언 등으로 상속분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면(즉, 유류분보다 자신에게 배분되는 몫이 적다면), 그는 침해된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나) 유류분 반환청구의 사례

유류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몇 가지 사례를 추가적으로 살펴본다.

[사례 1]

- A는 사망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 7억원을 현재 부사장으로 재직 중인 유능한 사원 X에 유증함. A에게는 배우자 B와 자녀 C, D가 있고, 직계존속인 P가 있음.
- A의 유증이 없었을 경우 B는 3억원, C와 D는 각 2억원을 법정상속할 수 있었으므로, A는 1억5천만원, C와 D는 각 1억원에 대한 반환을 X에게 요구할 수 있음(P는 B, C, D가 있으므로 상속인이 되지 못하여 반환청구권이 없음).

[사례 2]

- A에게는 두 아들 C · D가 있었는데, 생전에 후계자로 지목한 C에게 10억원을 증여하였고 4억원의 재산을 남긴 채 사망.

- C에 대한 증여가 없었을 경우 C와 D는 각 7억원을 법정상속할 수 있었고, 따라서 D의 유류분은 3억 5천만원임. D는 A의 재산으로부터 2억원밖에 상속받지 못하였으므로, C에 대하여 1억5천만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

다. 종합사례

- 공작기계 부품제조업을 경영하였던 A에게는 3명의 자녀 B, C, D가 있었는데, A는 3년전 자신이 후계자로 지목한 B에게 회사 주식 100%(증여 당시 시가 2억원)를 증여하였다. A는 현금 20억원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A가 생전에 개발한 기술이 특허를 얻는 바람에 상속 개시 시점에 이르러 회사의 주식가치가 5배로 크게 증가하였다. B는 A가 남긴 유산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을까? A는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더라도 상속재산 평가 시에는 상속 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17] 따라서 위 사례의 경우 A가 남긴 상속재산은 모두 30억원[20억원 + (2억원×5)]이고, 원칙적으로 B · C · D가 균분하게 10억원을 나누어 갖게 된다.

17. 앞서 언급하였듯이, 사전증여시 과세기준이 되는 재산가액을 증여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는 것과 상속분 산정의 기준시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B는 상속개시시점에서 생전증여가액을 평가하면 이미 10억원을 받은 것과 같으므로 결국 A의 유산은 C와 D만이 각각 10억원씩 나누어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후계자는 오히려 기업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상실할 수도 있다. A가 B에게 기업경영을 위한 자금을 집중시켜 주고자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B는 A가 사망하면서 남긴 재산(20억원)에 대하여 자신의 상속지분조차 관철하지 못하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 사례에서 A가 어떠한 방법을 따라야 B에게 사업자금을 집중시켜 줄 수 있을까?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C · D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A가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C · D의 유류분은 각 5억원이므로 B는 최대 10억원을 더 상속받을 수 있고, 이 때 B는 10억원 가치의 주식과 현금 10억원을 소유하게 된다.

다음으로는 회사의 가치 상승이 충분히 예견가능하였다는 전제에서, B에게 주식을 증여하는 것이 아니라 현금을 증여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 현금의 가치는 증여시와 상속시가 달라지지 않

으므로, 현금으로 생전에 증여를 하고 필요시 후계자가 주식을 매입하도록 하였다면 상승한 주식가치로 인하여 상속분이 감소되는 결과를 피할 수 있다.

2. 상법의 활용방안

가. 주식회사의 의사결정

회사는 법인이므로, 그 기관을 통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기관은 '주주총회'와 '이사회', '대표이사'를 들 수 있다.

상법은 기관분화의 원칙에 따라 위 세 기관이 서로 각자의 권한을 가지고 분화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가족기업적 특성으로 인하여 대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인이거나, 대표이사의 가족들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는 등 그 역할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실 대다수의 중소기업이 가족기업의 특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역할의 혼재는 회사가 문제없이 돌아가고 있는 동안에

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특히 창업 1세대의 경우 회사의 주식이 거의 100% 창업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창업주의 경영 판단이 거부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조차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창업주가 사망하고 가업승계가 원만히 되지 않은 경우 후계자의 의사결정에 대해 반대하는 이들이 나타날 수 있고, 이들이 후계자의 의사결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일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회사의 원활한 운영은 불가능해지는바, 회사운영에 있어 회사의 각 기관에게 주어진 권한이 어디까지인지를 명확히 파악하고, 후계자가 안정적인 회사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나. 각 기관별 권한

(1) 대표이사의 권한

대표이사는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과 일상업무에 관한 사

항을 결정 ·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2) 이사회의 권한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을 갖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는 주식회사의 필요상설기관이다. 단, 상법은 자본금이 5억원 미만인 주식회사로서 이사가 1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혹은 주주총회가 상법상 규정된 이사회의 역할을 나누어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회사의 업무집행에 대하여 의사결정을 할 권한을 갖는다(상법 제393조 제1항).

상법상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요한 것들은 다음과 같다.

이사회의 주요 결의사항

- 주주총회의 소집(상법 제362조)
- 대표이사의 선임과 공동대표의 결정(상법 제389조)
-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 대규모 자산의 차입 · 지배인의 선임 · 해임과 지점의 설치 · 이전 또는 폐지(상법 제393조 제1항)
- 이사의 경업거래와 겸직의 승인 및 경업의 경우의 개입권의 행사(상법 제397조)

- 이사의 자기거래의 승인(상법 제398조)
- 신주발생사항의 결정(상법 제416조)
- 준비금의 자본전입(상법 제461조)
- 중간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의3 제1항)
- 사채의 모집(상법 제469조)
-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516조의2)

(3) 주주총회의 권한

주주총회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의사결정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주총회의 의사결정권한 중에는 이사·감사의 선임·해임권, 정관변경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결국 주주총회는 회사 경영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회사경영권의 안정적인 승계는 근본적으로 주주총회에서 안정적인 의결권을 확보하는 문제로 귀결된다.

상법상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는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주총회의 주요 결의사항

- 이사 · 감사 · 청산인의 선임 및 해임(상법 제382조, 제385조, 제409조, 제415조, 제531조, 제539조)
- 이사 · 감사 · 청산인의 보수결정(상법 제388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상법 제360조의3, 제360조의16)
- 사후설립(상법 제375조)
- 정관변경(상법 제433조 제1항)
- 자본감소(상법 제438조)
- 재무제표의 승인(상법 제449조 제1항)
- 주식배당의 결정(상법 제462조의2 제1항 본문)
- 배당금지급시기의 결정(상법 제464조의2 제1항 단서)
-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 합병(상법 제522조)
- 분할(상법 제530조의2~530조의12)
- 청산의 승인(상법 제540조 제1항)
-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항)
- 해산(상법 제518조)

다. 안정적인 회사경영을 위한 주식 확보비율

그렇다면, 안정적인 회사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주식 확보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이 문제는 주주총회에 있어 필요한 의결정족수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리 상법은 의안의 중요도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차이를 두고 있다.

(1) 보통결의

보통결의는 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써 한다(상법 제368조 제1항). 보통결의사항은 상법이나 정관에서 특별결의사항 등으로 따로 정한 사항 이외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용된다.

(2) 특별결의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3 이상의 수로써 하는 결의이다(상법 제434조).

상법에 규정된 주요 특별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주요 특별결의사항

- 주식의 분할(상법 제329조의2 제1항)
- 주식의 포괄적 교환 · 이전(상법 제360조의3, 16)
- 정관의 변경(상법 제434조)
- 자본의 감소(상법 제519조)
- 회사의 해산(상법 제518조)
- 회사의 합병(상법 제522조)
- 회사의 분할(상법 제530의3 제3항)
- 회사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
- 영업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 타인과 영업의 손익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상법 제374조 제1항 제2호)
-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3호)
-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상법 제374조 제1항 제4호)
- 이사 · 감사의 해임(상법 제385조 제1항, 제415조)
- 주주 이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상법 제513조 제3항, 제516조의2 제4항)

(3) 특수결의

특수결의는 특별결의보다 더 가중되어 있는 것으로, 발기인 · 이사 · 감사 ·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면제(상법 제324조, 제400

조, 제415조, 제542조 제2항)의 경우와 주식회사의 유한회사로의 조직변경(상법 제604조 제1항)의 경우에는 총주주의 동의를 요하고 있다.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회사지배를 하기 위해서는 정관의 변경, 합병 등의 중요사항의 결의를 가능하게 할 정도의 의결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중소기업의 경우 주주 역시 몇 명 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중요사항의 결정에 있어 주주총회에 주주가 100% 출석을 하는 것을 오히려 일반적인 상황으로 전제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발행주식총수의 2/3 이상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런데, 창업주가 거의 100%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승계대책 없이 사망하고 그 주식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된다면, 후계자 이외의 상속인의 의결권이 후계자에 필적하는 상황이 생기게 된다. 이렇듯 회사의 주식이 분산될 경우 현 경영자의 방침에 반대하는 주주의 의결권이 1/3 이상이 되어 정관의 변경 등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다.

그 외에도, 회사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주식의 금전적 가치에만 관심이 있는 상속인들이 후계자가 아닌 회사의 경영을 노리는 외부인에게 주식을 매각하여 버림으로써 회사 자체가 후계자가

아닌 외부인에게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법상의 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라. 주식의 집중 및 분산방지를 위한 방안 – 주식양도의 제한

주식은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가 가능하다(상법 제335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소규모 회사에서는 주주 상호간의 신뢰관계를 보호하고 회사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주주의 참여를 배제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

따라서, 상법은 "주식의 양도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 제1항 단서)"라고 규정하여 주식양도에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단, 상장법인의 경우는 주식의 자유로운 유통을 그 본질로 하기 때문에 주식양도의 제한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주식양도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① 정관에 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어야 한다. 즉, 정관에 "주식의 양도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서는 주식의 양도를 할 수 없다", "이사회의 승인을 요건으로 주식의 양도를 할 수 있다"는 등

의 규정이 있어야 한다. ② 주식의 양도제한은 등기를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 주식양도의 승인기관은 반드시 이사회로 하여야 한다. 정관으로 승인기관을 대표이사 내지 주주총회로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마. 수종의 주식의 활용방안

(1) 상법상 수종의 주식

상법은 주식에 투자유인동기를 부여하여 주주의 모집을 용이하게 하고, 이를 통하여 주식회사가 자금조달의 융통성을 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허용한다.

상법에서 인정되는 수종의 주식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인데(상법 제344조 제1항), 이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가) 보통주

보통주란 다음에 설명할 우선주와 후배주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주식으로서 회사가 1종의 주식만을 발행한 경우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회사가 발행한 주식은 모두 보통주가 된다.

(나) 우선주

우선주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우선적 지위가 부여된 주식이다. 주의할 것은 우선주는 배당순위와 분배순위에 있어서 다른 주식보다 우선적 지위가 인정될 뿐이며, 다른 주식보다 고율의 배당을 받지는 않는다. 우선주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정관으로 이익배당에 관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44조 제2항 후단).

우선주는 정관으로 정한 소정의 배당률에 따라 우선배당을 받게 되는데, 이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서는 배당률에 제한이 없는 보통주가 우선주보다 고율의 배당을 받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 보통주의 배당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참가할 수 있는 우선주를 '참가적 우선주'라 하고, 참가할 수 없는 우선주를 '비참가적 우선주'라 한다.

한편, 우선주가 특정 회계연도에 정관 소정의 우선주 배당률을 배당받지 못하였을 경우(예컨대, 이익이 없어 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 다음 연도의 이익에서 우선적으로 배당받을 권리를 가지는 주

식을 '누적적 우선주'라고 하고, 당해 연도에 우선주 배당률을 배당받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연도에 이익배당을 받지 못하는 주식을 '비누적적 우선주'라 한다.

위와 같은 각종 우선주는 서로 결합될 수도 있는 것으로 회사는 '참가적 · 비누적적 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우선주를 발행할 수도 있다. 또한, 일단 우선주로 발행된 후에도 일정한 기한이 도래하거나 조건이 성취되면 자동적으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정할 수도 있다.

(다) 후배주

후배주란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후순위를 갖는 주식으로서, 보통주에 대하여 우선 배당하고 남는 것이 있는 경우에 배당을 받게 된다. 후배주 역시 배당순위나 분배순위에 있어서 후순위라는 의미일 뿐이다.

(라) 혼합주

혼합주란 우선주와 후배주의 효력이 혼합된 주식이다. 예컨대 이익배당에 있어서는 보통주에 우선하고 잔여재산분배에 있어서는 후순위인 것과 같이, 권리에 따라 우선주와 후배주의 성격을 동시에 갖는 주식이다.

(2) 특수한 주식

(가) 전환주식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 정관으로 어느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전환권이 부여된 주식을 전환주식이라고 한다(상법 제346조 제1항).

전환주식은 예컨대, 전환권이 있는 우선주를 인수하여 우선배당을 받다가, 추후 배당률이 높아지고 주식시세가 상승하는 경우 전환권을 행사하여 보다 많은 수량의 보통주를 확보함으로써 배당금과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주주에게 투자유인 동기를 제공하고, 회사입장에서는 자금조달을 원활히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나) 상환주식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발행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주식을 상환주식이라고 한다(상법 제345조 제1항). 상환주식은 회사의 일시적인 자금조달의 필요를 충족시키고 일정기간 후에 발생할 배당압박을 피하며 타인자본에 의하는 것이 배당보다 유리한 경우에 합리적인 재무관리를 위하여 이용되고 있다.

(다) 무의결권주식

회사는 이익배당에 관한 우선주에 대하여 의결권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상법 제370조 제1항). 무의결권주식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이 없다는 점에서는 사채와 유사하나, 이자가 아니라 이익배당을 받는 점에서 사채와 구별된다.

무의결권주식을 가진 주주는 의결권이 없고, 이러한 주주가 가지고 있는 무의결권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의결권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주식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배당을 받지 않는 경우, 정관의 변경 · 회사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무의결권주식을 가진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여 무의결권주식을 가진 주주들만의 종류주주총회가 소집되는 경우 등에는 무의결권주식을 가진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무의결권주식의 총수는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상법 제370조 제2항). 그러나 상장법인이 일정 요건하에서 발행하는 무의결권주식은 발행주식총수의 2분의 1까지 발행할 수 있다.

(3) 무의결권주식의 활용

위 주식들 중 가업승계와 관련하여 활용하기 용이한 것으로는 무의결권주식이 있다. 무의결권주식은 회사의 경영에는 관심이 없고 이익배당에만 관심이 있는 투자주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데 적합하고, 회사의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데에 본래의 기능이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후계자가 안정적으로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는 정관변경이나 합병 등 중요사항의 결의에 필요한 수의 의결권주식을 확보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자식이 여러 명일 경우 후계자가 아닌 자식들에 대한 유류분의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후계자에게는 보통주를 승계시키고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에게는 무의결권주식을 승계시킨다면, 후계자에게로의 안정적인 경영승계와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에 대한 재산적 보상을 동시에 이룰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민법상 유류분의 문제와 후계자에 대한 안정적 경영승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있으나, 비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환금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후계자가 아닌 상속인이 불만을 가질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분쟁이 야기될 소지도 없지는 않다.

이 경우, 무의결권주식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회사의 이익으로써 상환할 것을 정함(위에서 말한 '상환주식')으로써 후계자가 승계한 회사의 경영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른 후 다른 상속인들에게 환금성을 보장해 주는 방법 등으로도 어느 정도 보완이 가능할 것이다.

즉, 상법이 정한 수종의 주식의 성격을 조합시킴으로써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무의결권주식 등을 가업승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실무례가 충분히 축적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제 무의결권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그 후속조치와 세법상의 평가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단정짓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렇더라도 위와 같은 상법상의 제도는 까다로운 이해관계의 조정을 가능하게 할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고, 상법 개정의 방향 역시 이와 같은 수종의 주식활용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바,[18]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관련 전문가들의 조언을 얻어 활용할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18. 일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인정되지 아니하는 여러 가지 성질의 주식발행을 인정하고, 이를 가업승계에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예컨대, 주주총회 결의에 대하여 거부권을 가지는 주식(속칭, '황금주')을 통하여 창업주가 승계 후에도 사후적으로 일정 권한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이 소개되고 있다.

3. M&A를 통한 가업승계

가. M&A를 가업승계에 활용

M&A는 Merger and Acquisition의 약자로,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을 매수하는 '기업의 인수', 혹은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로 합쳐지는 '기업의 합병' 등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구조를 만들어내는 경영전략을 의미한다.

친족이나 임직원 중에서 사업을 승계할 후계자를 마땅히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종업원의 고용유지 및 사업계속, 경영자 개인의 노후생활자금을 얻기 위하여 회사 자체를 매각하여 제3자가 경영하도록 하는 목적에서 M&A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고, 혹은 부모가 운영하는 회사를 그 자식 세대로 효율적으로 이전하기 위한 수단의 한 가지로서도 M&A를 활용할 수 있다.

나. M&A의 종류

M&A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성할 수 있다. 대표적인 M&A의 형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합병

합병은 2개 이상의 기업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흡수되어 소멸하는 회사의 주식에 대신하여 합병하는 회사의 주식이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주식양도

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다. 기업의 경영자가 바뀔 뿐이기 때문에 회사의 동일성은 그대로 유지된다. 경영자로서는 직접 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3) 주식교환

예컨대, 어느 회사(A)가 다른 회사(B)를 자회사화할 때, B사의 주주가 보유한 B사의 주식을 A사의 주식으로 교환하는 방법이다. A사의 입장으로서는 매수대가가 자사의 주식뿐이므로, 자금부담 없이 상대회사를 자회사로 만들 수 있는 이점이 있다.

(4) 영업양도

영업양도는 회사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회사에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합병과 비교할 때 거래의 대상이 선별되기 때문에 매수자는 불필요한 사업부분은 이전받지 않을 수 있다.

(5) 회사의 분할

회사분할은 1개의 회사가 2개 이상의 회사로 나누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 사업부문을 가진 회사가 그 일부를 다른 회사로 분리하여 매각하거나, 분리된 회사를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다. M&A의 절차

M&A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1) M&A의 결정 및 자문기관의 선정

M&A를 하겠다는 내부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본격적인 M&A를 위한 사전준비에 들어가야 한다. M&A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실행에는 오랜 기간이 요구되고, 그 과정도 복잡하므로 전문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외부기관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외부기관으로는 회계법인, 법무법인, M&A 컨설팅회사, 금융기관 등이 있는데, 각 기관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위탁하는 것이 좋다.

(2) 기업실태 파악 및 기업가치 조정

그 다음 단계로 해당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여야 한다. 어차피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면 상대방에서도 실사를 통하여 기업가치를 판단할 것이다.

그에 앞서 미리 자신의 기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기업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후계자에게 승계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기업구조조정의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이전하는 기업의 가치를 최대한 슬림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가치조정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접촉과 교섭

어느 정도 사전작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인수의향이 있는 개인 또는 회사와 접촉 및 교섭이 시작된다. 기업을 인수하려는 의향을 가진 자를 파악하게 되면 비밀유지약정을 체결하고 기업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교섭에 들어가게 된다. 교섭의 주요 항목은 가격, 고용승계, 사업부문의 존폐 등이다.

(4) 양해각서의 체결

양해각서는 매매계약의 체결시한이나 비밀유지 약정, 기업실사의 여부 및 시기 등 어떠한 방식과 조건으로 해당기업을 인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적인 합의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양해각서의 내용은 양자간의 신사협정으로서 반드시 인수종결까지 가야 할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5) 실사

M&A에 있어 대상기업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통상 양자 사이에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 인수인측에 의해 기업가치에 대한 실사가 개시된다. 인수인은 실사과정에서 확보된 자료를 기초로 재무제표, 영업요소,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기업가치를 평가하며, 이를 근거로 수용 가능한 가격을 결정하고 M&A 거래구조를 정하게 된다.

(6) 계약서 체결 및 실행

실사가 종료된 후에는 양자간에 본 계약서를 체결하고 정식으로 M&A에 대한 합의를 한다. 본 계약서가 체결된 후에는 합의에 참여한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게 되며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계약서 작성이 끝나면, 양자는 주식매매를 위한 대금지급과 필요한법적문서를 교환하고, 주주총회의 소집 등 계약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각종 절차를 실행한다.

(7) 사후조치

M&A가 이루어지고 나면 관련 법령에 의한 신고 및 공시 등의 절차를 경료하여야 하며, 보고 주주총회 등 기업 내부절차도 밟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사전에 합의된 바에 따라 경영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을 안정시켜야 한다. 이 과정에서는 노동조합과의 관계 개선이나 M&A 비용 상환 문제 등을 원만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기업가치의 평가

M&A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는 M&A 대상기업에 대한 가치의 평가, 즉 가격의 결정이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비상장회사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주가를 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비상장주식의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은 수십가지가 있으나, 주요 주식가치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상증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

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평가기준일의 순자산가치와 평가기준일로부터 과거 3년간의 순손익가치를 2:3의 비율로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으로서, 상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과세목적으로 주식거래가격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실무상 매우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주식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업의 업종이나 특성을 무시한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개별회사별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고, 기업의 과거정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장성 등 미래수익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2) 현금흐름할인법(DCF)에 의한 평가방법

DCF(Discounted Cash Flow)에 의한 평가방법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지속된다는 가정하에 일정기간 동안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이를 가중평균 자본비용으로 할인한 현재가치를 기업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실무상 다양하게 적용되는 방법이다.

그러나,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예측에 기초하게 되므로 객관성 확보가 어렵고, 미래 현금흐름의 추정치에 따라 평가결과가 크게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3) PER를 기준으로 한 상대가치 평가방법

기업의 주당 순이익과 기업의 주가는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기업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인 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를 기준으로 기업의 주가를 예상하는 방법으로, 유사기업의 주가를 그 기업의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수치(PER)에 평가 대상 기업의 주당 순이익을 곱하여 평가 대상 기업의 주가 예상치를 산출하는 방법이다.

업종이 동일하고 자산규모나 매출액, 부채비율 등 사업형태가 유사한 비교대상 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합리적으로 주식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나, 비교대상기업이 동일한 업종이더라도 규모나 사업형태가 다른 경우 직접적인 비교가 불합리하고, 비교대상기업의 규모나 사업형태가 달라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주관적이고 임의적인 평가가 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기업가치 평가의 방법을 통하여, 현재의 기업가치를 추산할 수 있고, 추구하는 M&A의 형태와 목적에 따라 기업가치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기업구조조정의 방식을 통하여 자식세대에 회사를 넘겨주는 방법으로서 M&A를 고려하고 있다면 상증세 절세를 위하여 기업가치를 낮추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이 경우 상증법 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절세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반면, 제3자에 기업을 매각하기 위하여 M&A를 고려하는 경우라면 기업가치를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 M&A를 통한 가업승계의 구체적 방법의 예시 및 주의사항

(1) M&A를 통한 가업승계의 방법 예시

자식세대에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승계의 방식으로 M&A를 활용하는 상황을 가정하여 예시를 해 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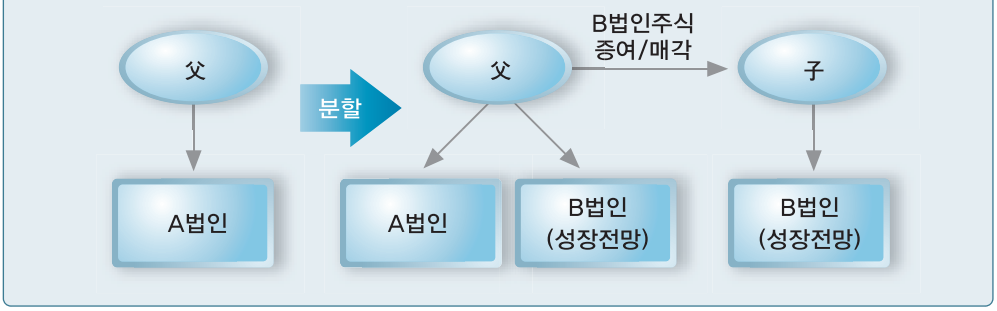
(가) 고수익·고성장 사업은 분리 후 승계

부모세대가 운영하는 회사가 여러 사업부문으로 나뉘어져 있는 경우, 그 중 향후의 사업전망과 수익성이 높은 사업은 가능한 한 빨리 자식세대에게 승계하여 주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수익성 및 성장성은 매우 높으나 그 자산가치가 낮은 사업을 상법상 회사분할의 방법을 통하여 기존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

한 후, 그 주식을 자식세대에게 증여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 고성장 · 고수익 사업을 나중에 증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상증세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고 아울러 자식세대는 전체 가업을 승계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고수익 · 고성장 사업의 분리승계의 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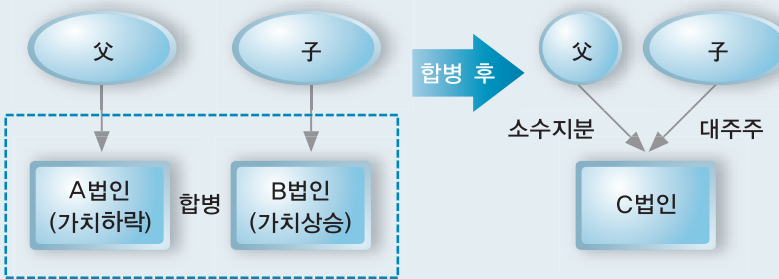


(나) 회사간 합병

일단, 자식세대가 승계한 고수익, 고성장 사업을 운영하여 일정한 규모가 되면, 부모세대가 운영하는 기존 회사와 합병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상장법인의 가치는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이 높으면 높을수록 높게 평가되고, 가장 최근 사업연도의 이익이 낮으면 낮을수록 낮게 평가된다.

따라서, 자식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가장 높게 되고, 부모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가 가장 낮게 되는 시점에, 양 회사를 합병한다면 자식세대는 부모세대보다 합병법인의 주식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될 것이므로, 자식세대가 부모세대의 가업을 자연스럽게 승계할 수 있을 것이다.

회사간 합병의 예



(다) 사후처리

그 이후, 부모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이를 상속, 증여, 매매 등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합병법인의 주식가치가 낮아지게 되면 당시의 시가로 유상감자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수 있다.

(라) 기타 구조조정 방법의 활용

위와 같은 방법 외에도 현물출자, 영업양도 등 다양한 방법을 고려할 수 있고 그러한 구조조정 방법에 따라 그 조세상의 효과가 달라지게 된다.

궁극적으로 구조조정 방법을 통하여 '가업승계'에 따른 조세부담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각자가 처한 상황을 면밀히 분석한 뒤 그에 가장 알맞은 구조조정 방법을 선택하여 실행하여야만 하고 어떤 일률적이고 획일적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 위와 같은 구조조정 방법들은 어디까지나 사회통념상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식으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만약, 경제적 합리성도 갖추지 않은 채로 무리하게 구조조정 방법을 통하여 회사의 가치를 후계자에게 이전시키고자 하다면 오히려 그로 인한 과세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이하에서는 국세청이 무리한 구조조정 방법을 통하여 회사를 후계자에게 이전하였을 경우에 어떤 과세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2) 국세청의 과세문제 제기 가능성

상증법은 회사간의 합병은 당해 합병 당사회사의 가치를 감안하여 적절한 합병비율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만약 합병비율이 어느 일방의 주주에게 경제적 이익이 분여되도록 결정되면 그 이익을 분여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38조).

따라서, 부모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와 자식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가 합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 각각의 객관적인 가치에 기초하여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만 할 것이고, 자식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가치를 자의적으로 높게 평가하여 합병비율을 왜곡시킨다면 자식세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상증법은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당해 대주주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상증법 제39조의 2).

따라서, 부모세대가 자식세대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출자한 지분을 소각하면서 지급받는 감자대가는 당해 주식의 객관적인 시가로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자식세대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다.

그 외에도 상증법은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로부터 기업구조조정방법을 통하여 회사의 경제적 가치를 이전받은 경우, 이것이 정당한 범위 내에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증여의 실질을 가졌다고 보고 자식세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기업구조조정 방법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에 관한 제언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세대가 자식세대에게 회사의 가치를 이전시키면서 기업구조조정 방법을 폭넓게 활용할 수 있고, 그러한 기업구조조정 방법을 통하여 불필요한 조세부담의 상당부분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 방법을 통한 가업승계 방법은 세법에서 정한 구조조정 관련 세제 및 상증세 전반에 걸친 폭넓은 이해와 경험에 기초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경험과 이해가 없다면 실제로 상증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란 사실상 곤란할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기업구조조정 방법을 통한 가업승계는 자칫 잘못 설계하면 오히려 과세관청이 과세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되는바, 반드시 조세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

부록

1. 2008년 세제개편 주요내용 · · · · · · · · · · · · · 210
2. 가업승계 지원기관 연락처 · · · · · · · · · · · · · 212

1. 2008년 세제개편 주요내용(2009.1.1시행)

가. 가업상속공제 범위 확대

현행 상증법은 가업상속공제를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30억원)로 제한하고 있으나, 세제개편은 가업상속재산가액의 40%(최대 100억원*)까지 확대하였다.

*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60억원, ▲15년 이상 80억원, ▲20년 이상 100억원

창업자 등 현재 경영자의 노력으로 회사의 가치를 증대시키더라도 그 대부분을 상속세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면 경영자의 경영의욕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

세제개편은 가업상속공제의 범위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경영자의 경영의욕을 고취시키고 자금력이 부족한 후계자의 승계부담을 크게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나. 가업상속요건의 완화

세제개편은 가업상속의 요건 중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현

행 15년에서 10년으로 축소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위한 요건을 완화시키고(중소기업의 평균 사업 영위기간은 11.4년),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대표자로 취임하여야 하는 요건 역시,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신고기한 후 2년 내에 대표자로 취임하면 되는 것으로 완화하였다.

다. 사후관리요건의 완화

가업상속 공제의 사후관리 요건중 하나로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에 가업상속 공제혜택을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추징하도록 되어 있다. 세제개편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하더라도 '상속받은 비상장주식의 물납으로 지분이 감소한 경우' 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2. 가업승계 지원기관 연락처

〈중소기업청〉

사업전환과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번지 1동 (둔산동)

042-481-8901

〈중소기업중앙회〉

가업승계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02-2124-3185~6

〈인터넷이용안내〉

중소기업청 : www.smba.go.kr

중소기업중앙회 : www.kbiz.or.kr

가업승계 전용 홈페이지 : www.successbiz.or.kr

참 고 문 헌

- 강재원, Tax Saving 전략과 가문의 세금, 바른지혜, 2008.
- 김완일 · 고경희, 상속 · 증여세 실무편람, 이택스코리아, 2008.
- 남영호 · 박근서, 가족기업론(제2판), 청목출판사, 2008.
- 박근서 · 장지환, 평생에 걸쳐 이룬 기업 어떻게 물려 줄 것인가, 성도회계법인, 2003.
- 소순무, 조세소송(개정4판), 영화조세통람, 2008.
- 신상철,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2007.
- 신한은행, 중소기업 경영자를 위한 사업승계 가이드라인, 2008.
- 이광재, 상속 · 증여세의 이론과 실무, 세경사, 2008.
- 임승순, 조세법, 박영사, 2008.
- 국세청, 2008세금절약가이드(2), 2008.
- 중소기업중앙회 · 중소기업연구원 · 기은경제연구소, 중소기업 가업승계 세제개편 방안, 2008.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가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국민인식 조사보고서, 2007.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제조업 CEO 경영의욕 및 경영승계 의견조사결과, 2006.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실태조사보고, 2006.
- 조병선 · 조봉현, 중소기업 경영승계의 실태와 과제, 2007
- 최상우 · 김기홍 · 박준영, 기업금융과 M&A, 삼일인포마인, 2008.
-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 2006.
- 蒔田知子, 中小企業のための事業承繼Q&A(相續 · 贈與編), 稅務研究會 稅研情報センタ, 2007.
- 蒔田知子, 中小企業のための事業承繼Q&A(種類株活用編), 稅務研究會 稅研情報センタ, 2007.
- 蒔田知子, 中小企業のための事業承繼Q&A(M&A編), 稅務研究會 稅研情報センタ, 2007.
- 石丸喜搏, 中小企業のための事業承繼の稅務と對策 實踐マニュアル, 三修社, 2007.
- 安達敏男, わかりやすい中小企業經營者の事業承繼, 日本加除出版株式會社, 2007.

중소기업 가업승계 안내서

가업승계 A에서 Z까지

발 행 일 2008. 12.

발 행 인 중소기업청 홍석우 청장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발 행 처 중소기업청 www.smba.go.kr
(302-701)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1동 (둔산동)
중소기업중앙회 www.kbiz.or.kr
(150-74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기 획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 / 02. 2124. 3186

집 필 법무법인 율촌 / 02.528.5200
대표집필자 변호사 강석훈
(E-mail : shkang@yulchon.com)

편집·인쇄 고려문화 / 02. 2279. 5676